

LIG넥스원

윤리·준법경영 보고서

2022. 5.

법무Compliance팀

목 차

목 차	1
■ 개 요 - 당사 규정체계에 대한 이해	4
1. 리더십과 조직문화	5
1.1.부패방지 공약	5
1.2.부패방지 정책	11
1.3.부패방지프로그램의 이행과 감독	12
1.4.준법지원인의 역할과 책임 - 준법지원인이 이사회 참석, 보고	15
2. 내부 통제	23
2.1.부패방지 프로그램	23
2.2.부패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과 개선	29
2.3.부패 조사 시스템	32
2.4.부패 조사 시스템 품질 보증	35
2.5.부패 조사의 적절성 보장	37
2.6.부패 조사의 공개	38
3. 임직원 지원	39
3.1.일반 부패방지 교육 프로그램	39
3.2.임직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42
3.3.부패방지 교육 프로그램 효율성 점검	50
3.4.부패방지 촉진을 위한 임직원 인센티브	55
3.5.비윤리적 행위를 거부한 임직원 및 제보자 보호	56
3.6.임직원 및 제보자에 대한 보복 금지	57
3.7.제보 채널	60
4. 이해상충	65
4.1.이해상충 방지 규정	65
4.2.이해상충 관리 절차	68
4.3.공공부문 출신 직원 고용 정책	70
4.4.정치인 고용 정책	71
5. 고객 연계	73

5.1.후원, 기부, 스폰서십.....	73
5.1.1. 정치적 기부 – N/A.....	73
5.1.2. 정치적 기부 공개 – N/A.....	73
5.1.3. 자선단체 기부.....	73
5.2.로비 – N/A.....	75
5.3.선물 및 편의 제공.....	75
6. 공급망 관리.....	77
6.1.공급망 구축 시 구매부서 감독.....	77
6.2.신규 협력사 부패방지 실사.....	78
6.3.협력사 부패방지 요구.....	78
6.4.2 차 협력사에 대한 부패방지 프로그램 적용.....	81
6.5.협력사 부패 조사 및 공개.....	83
7. 회사의 대리인 및 합작투자.....	84
7.1.대리인.....	84
7.1.1. 대리인 고용 정책.....	84
7.1.2. 대리인 고용 시 부패방지 실사.....	85
7.1.3. 대리인 실소유자 확인.....	86
7.1.4. 대리인 계약, 부패방지조항.....	87
7.1.5. 대리인 인센티브.....	89
7.1.6. 대리인 정보.....	91
7.1.7. 대리인 제재.....	91
7.2.합작회사.....	91
7.2.1. 합작회사 부패방지 실사.....	91
7.2.2. 합작회사 부패방지 계약.....	91
7.2.3. 합작회사 부패방지 보장 – 합작회사 직원 부패방지 교육 등.....	93
8. 절충교역 – N/A.....	94
9. 고위험시장.....	95
9.1.고위험 시장 위험관리절차.....	95

9.2. 자회사 정보.....	96
9.3. 자회사 지배구조.....	97
9.4. 방위산업 매출 비중.....	98
10. List of Evidence & Sources	99

■ 개 요 - 당사 규정체계에 대한 이해

우리 회사의 윤리 및 준법 경영에 관한 규정은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 준법통제기준, Compliance Program 운영규정,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이 있습니다.

이 5개의 규정은 제정의 계기가 된 법령과 제정 시기가 달라서 용어와 표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우리 회사의 윤리 및 준법 경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윤리규범과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윤리 및 준법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합니다.

둘째, 준법통제기준은 준법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조직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Compliance Program 운영규정은 준법경영에 관한 세부조직과 활동 내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활동이 포함됩니다.

넷째,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은 부패방지에 관한 국내외 법령에 호응하고자 제정한 규정입니다.

이 5개의 규정은 서로 단절된 규정이 아니고 통합된 체계를 이루는 규정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내용에 관한 조항이 B 규정에는 없더라도 C 규정에 있다면 C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고 그 규정에 따라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지원인은 Compliance Program 운영규정의 자율준수관리자이며,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의 부패방지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리더십과 조직문화

1.1. 부패방지 공약

- 1) LIG 넥스원(이하 회사)은 매년 CEO가 부패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구체적으로 공개함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3 조

제 13 조 [선언 목적]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선언한다.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4 조

제 14 조 [선언 방법]

- ①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실천의지에 대하여 공식적인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연 1회 이상 회사 전체 임직원에게 표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문서는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2) 부패방지 공약은 부패에 대해 조직 내 어떤 형태로든 용인되지 않으며,
회사와 CEO가 부패방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함

#1) 홈페이지 - 윤리/준법 - 대표이사 실천 선언문

윤리/준법	상생경영	사회공헌
윤리경영철학 규정 활동 신고센터		
대표이사 실천 선언문 01 뇌물 및 부패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개인적 또는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음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외 공무원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기존 또는 향후의 거래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지급을 제의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02 뇌물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실천하겠습니다. 회사는 뇌물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규정에 따른 처벌을 반드시 실시할 것입니다. 03 윤리적 행동을 거부하는 직원이나 뇌물 및 부패사건을 신고한 직원 또는 제3자 및 공급업체 등의 직원들이 보호받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개인적 또는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외 공무원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기존 또는 향후의 거래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지급을 제의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04 윤리/준법경영의 실천만이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법률과 윤리적 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의식을 확립하겠습니다. 05 회사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와 관련 있고, 당사의 일을 맡아 하는 모든 제3자(에이전트, 협력업체, 중개인, J/V 등)가 뇌물 및 부패방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6 회사는 전직 혹은 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한국의 법(공직자 윤리법)을 준수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 내용 요약(대표이사 실천 선언문)

- 뇌물 및 부패행위 척결
-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실천
- 윤리적 책임 준수

#2) CEO Message(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실천의지 표명)

LIG

윤리/준법경영 실천의지 표명을 위한 CEO Message

임직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윤행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1년과 함께 종식되기를 염원한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히려 끝없는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방역이 일상화 되었고, 우리의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도 크게 바뀌는 등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 많은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기업들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장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개정된 공정거래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규와 전세계적으로 제기되는 환경 이슈, ESG 경영 요청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임직원 모두 힘을 모아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도경영원칙을 견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 협력회사의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 등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임직원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회사의 투명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제 윤리/준법경영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회사의 윤리/준법경영 의지에 맞추어 혁신을 주도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 세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수행 시 지켜야 할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며, 위법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시, 승인, 묵인하여서는 안됩니다.

둘째, 회사가 시행하는 모든 윤리/준법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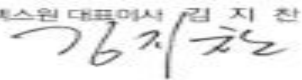
셋째, 윤리/준법경영에 반하는 행위를 반드시 적발하고, 임직원, 제3자를 포함한 모든 제보자는 물론 비윤리적인 행위를 거부한 직원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임직원 개인이 법적·윤리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 회사의 지속성장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식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제재할 것입니다.

LIG넥스원 여러분,

윤리/준법경영이라는 기반을 단단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발전이 가능하며 비로소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2022년 한 해 호랑이의 눈으로 회사의 윤리/준법경영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임직원 한 분 한 분이 멈추지 않고 정도경영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8
 LIG넥스원 대표이사 김 지 찬


☞ 내용 요약(CEO Message)

- 업무수행 시 지켜야할 규정 준수, 위법행위 참여 금지
- 회사의 윤리/준법경영 활동에 동참
- 비윤리적 행위 거부 직원 및 제보자 보호

#3)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실천서약


LIG Nex1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서약

윤리경영 실천서약

본인은 LIG넥스원 주식회사 임직원으로서 윤리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올바른 기업윤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업무에 임한다.
- 고객, 주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다.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 협력업체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발전을 추구한다.
- 임직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직장예절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 비리 행위도 하지 않으며, 임직원간 폭언 · 폭행 · 성희롱 및 기타 비윤리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회사나 본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LIG넥스원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한다.
- 업무 수행과정에서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및 부정 · 비리행위를 인지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부정 · 비리행위를 제안 또는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윤리경영실에 신고한다.
- 회사 윤리규범 위반에 따른 조사가 진행될 경우, 회사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활동 등에 모든 협조를 다하며, 비윤리 행위에 대한 회사의 무관용 원칙에 동의하며 회사의 징계규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22년 01 월 일

소 속 :

사 번 :

성 명 :



LIG Nex1



준법경영 실천서약

LIG Nex1

본인은 LIG넥스원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준법경영의 실천이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기업을 위한 수단이며 우리의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높은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시 관련된 국내의 법규 및 사내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
 - ①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고 각국의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며, 담합, 불공정거래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또한 협력업체를 사업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하도급거래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 ② 부패방지 준수
사업상의 이득을 취득·유지할 목적으로 국내의 공무원 및 고객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제공 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이나 국가의 모든 현지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③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회사의 영업비밀, 기밀정보 등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배포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하지 않으며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고객 및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사용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⑤ 근로기준 준수
임직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근로기준, 고용평등, 노사관계 등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⑥ 환경·안전·보건 기준 준수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국제기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⑦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
재무·회계에 관한 기록이나 보고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업정보 및 중요사항 등을 성실하게 공시한다.
2. 본인은 위법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시·승인·묵인하지 아니하며, 위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Compliance팀)에 알리고 리스크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본인은 Compliance Program을 포함하여 회사가 시행하는 모든 준법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자율준수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소 속 :

2022 년 01 월 일

사 번 :

성 명 :

☞ 내용 요약(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실천서약)

- 회사의 모든 임직원(CEO 포함) 매년 부패방지 실천서약 실시
- 비윤리적 행위 금지
-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이나 국가의 모든 현지 부패방지 관련 법규 준수(금품, 향응 등 뇌물 제공 행위 금지)

#4) 협력회사 윤리준법경영 레터

LIG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

존경하는 대표님,

임인년 새해를 맞아 대표님과 임직원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새해 소망하는 바가 모두 이루지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당사에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윤리규범과 그 실천지침을 통해 당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으며, "회사의 전 임직원은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다른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임직원은 협력사로부터 일체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협력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 임직원에게 선물, 금품, 향응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와 업무 진행에 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경우가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와 같이 정성 어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훈훈한 명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당사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의 요구를 받으셨다거나 불합리한 거래 또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당사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시에는 제보에 대한 비밀보장은 물론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당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의지에 대해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가족, 친지와 따뜻한 정을 나누시는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24
LIG넥스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지 찬 드림

☞ 내용 요약(협력회사 윤리준법경영 레터)

- 매년 CEO 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모든 제 3 자에게 회사의 부패방지에 관한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제 3 자도 부패방지 실천에 협력 및 참여하여 주기를 당부

1.2. 부패방지 정책

1) LIG 넥스원은 아래의 5 개의 규정을 근거로, 부패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

- ① 윤리규범 [NEX1(M)-140-04]
- ② 윤리규범 실천지침 [NEX1(M)-141-01]
- ③ 준법통제기준 [NEX1(M)-140-08]
- ④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NEX1(S)-460-01]
- ⑤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NEX1(M)-141-02]

2) 상기 1)의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 있는 5 개의 규정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어디서나 접근 가능함

#1) 홈페이지 - 윤리/준법 - 규정

준법통제기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을 제정하여 Compliance Program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Compliance Program이란 임직원이 업무수행 시 관련법규를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는 준법경영활동입니다.

윤리규범

다운로드 ↓

윤리규범 실천지침

다운로드 ↓

준법통제기준

다운로드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기준

다운로드 ↓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다운로드 ↓

내용 요약

- 위 5 개의 규정은 회사의 윤리경영과 준법 경영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3) 부패방지 정책은 회사의 임직원과 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국내외 법인 및 그 소속의 모든 임직원(비상임 이사 포함)에게 적용함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적용범위 제 2 조

제 2 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모든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한다)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2)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적용범위 제2조

제 2 조 적용범위

본 부패방지규정은 회사, 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국내외 법인 및 그 소속의 모든 임직원(사외이사, 기타비상무 이사 등 모든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

- 4) 또한 부패방지 정책은 뇌물, 공무원에 제공하는 금품, 상업성 홍보비용, 급행료, 정치후원금 등 제공을 금지한다고 명시함

#1)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금지사항 제 4 조

제 4 조 금품 등의 제공금지

① 회사의 임직원은 개인적 또는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외 공무원을 비롯한 업무 관련자, 기존 또는 향후의 모든 거래 상대방 등에게 금품 등의 지급을 제의하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란 발주처 구매절차에 영향력 행사를 통한 사업수주,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의 편의 확보, 세금이나 벌금의 회피, 규제·단속의 제외 등과 같이 정당한 경쟁 및 절차가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1.3. 부패방지프로그램의 이행과 감독

- 1) 1.2.1)과 같이 회사는 5 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부패방지 프로그램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함
- 2)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설정, 운영 및 감독함
- 3)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에게 반기 1 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 받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4) 회사의 부패방지 관련 정책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함

#1) 준법통제기준 제6조

제 6 조 각 기관의 역할
(1)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준법통제체제를 정비하고 실효적으로 운영하는지를 감독한다.
(2) 대표이사는 준법통제기준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규모나 영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준법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준법통제기준을 준수한다.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20조

제 20 조 [이사회 보고]
자율준수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계획 및 운영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보고서

자.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주요활동내역	처리결과
2021.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임명 및 운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8조)	- 자율준수협의회(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문기구) 위원 임명 및 운영 * 회장 : 1명, 위원 : 4명
2021. 1. ~ 2.	전사 자율준수실천조직 운영(자율준수실천리더와 실천자 임명) (준법통제기준 제15조)	- 임·단위 조직 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임명(약 310명) - 법무Compliance팀, 전사 자율준수 실천조직 운영
2021. 2.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인 실시 (윤리규범 제4장)	- 법무Compliance팀, "윤리와 준법 문화 확산 및 준수" CEO 메시지 당사 인프라넷 공지
	협력회사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인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1장제1조제(3)항)	- 법무Compliance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실천" CEO Letter 협력사 발송
2021. 2. ~ 3.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3장제3조제(4)항)	- 임직원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완료 (약 3,100명)
	외부업체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1장제1조제(3)항)	- 외부업체(협력회사 포함)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완료 (약 160개사)
2021. 3.	윤리/준법경영 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자율준수실천리더/실천자 대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 위험평가분야 서면교육 실시(약 420명)
2021. 3.	전사 위험평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2조)	- 법적 위험의 크기 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함 - 당사 임·단위 조직을 고, 중, 저위험군으로 분류 * 부패방지 고위험조직(25개), 공정거래 고위험조직(7개), 하도급 고위험조직(4개) 등
2021. 6.	경기 윤리/준법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전사 임직원 대상, 경기 윤리/준법교육 실시(약 3,100명)
2021. 9.	서연경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7조)	- 고위험군 대상, 병행(부패방지, 공정거래, 하도급, 개인정보 등) 별 서연경관 질의서 답변에 대해 특이 사항 없음 - 단, 답변 정확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점검 실시 예정
2021. 12.	주요 법령 특별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고위험군 대상, 병행(부패방지, 공정거래, 하도급, 개인정보 등) 별 특별교육 실시(43개 조직)
2021. 12. ~ 13.	현장점검 실시	- 서연경관의 정확성 검증 실시 - 전사 임·단위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4)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_21.1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1. 제목	LIG넥스원(주) 2021년 하반기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2. 주요내용	1. 2021년 하반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 자율준수 교육 - 전 임직원 대상 정기 준법교육 -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이상 조직을 대상으로 주요 법령 별 교육 실시 ○ 자율준수 점검 - 고위험군 조직 대상 해당 법령 준수여부 모니터링, 사전 법령위반 리스크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서면점검 실시 - 인터뷰 및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한 자율준수 현장 점검 실시 ○ 자율준수 활동 -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협력업체의 인식 수준 조사 -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인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캠페인 등 - Compliance News 게재
3. 결정일자	2021-12-16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상기 결정일자는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관련공시 -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_21.06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1. 제목	LIG넥스원(주) 2021년 상반기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2. 주요내용	2021년 상반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동 실적 - 자율준수 활동 조직 구성 ·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 선정 - 전사 대상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한 팀단위 조직별 위험등급 지정 - 자율준수 서면 점검 진행 - 윤리/준법 집합 교육 · 임원,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 신입/경력직원 등 ○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운영 - 해외 Agent 선정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및 조치 ○ 기타 자율준수 활동 -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인 -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 Compliance News 게재
3. 결정일자	2021-06-28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상기 3항의 결정일자는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관련공시 -

1.4.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책임 - 준법지원인 이사회 참석/보고

- 1) 회사의 이사회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 및 공시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함
- 2) 이사회에서 선임한 준법지원인은 자율준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함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4조

제 4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①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에서 선임한 준법지원인이 있고 별도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준법지원인이 자율준수관리자가 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을 겸임한다.

#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_18.1

공정 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1. 제 목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2. 주요내용	○ 변경사유 -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선임 ○ 선임사할 - 변경 전 : 이 정도경영담당 - 변경 후 : 정 법무담당 * 정상철 자율준수관리자 주요약력 · 생년월 : 19 년 월 · 주요약력 : LIG넥스원 법무담당 LIG넥스원 준법지원인(변호사) · 연락처 : 031-8026-7241 ○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범위 - 회사에 적용되는 대내외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을 총괄 * 주요적용법령 : 부패방지법령, 공정거래법령, 방위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3. 결정일자	2018-01-19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할	상기 결정일자는 자율준수관리자 변경에 대한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관련공시 -

- 3)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함

#1) 상법 제542조의 13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명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한다.	
⑦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상장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⑪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제6항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⑫ 그 밖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 4)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함

#1) 준법통제기준 제2조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준법통제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법통제'란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 과정을 말한다.
2. '법적 위험'이란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3. '준법지원인'이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법 제542조의 13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2) 준법통제기준 제7조

제 7 조 준법지원인의 임면

- (1)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2) 대표이사는 준법지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준법지원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 (3) 준법지원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며, 임기 중 해임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제2항 각 호의 해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4) 준법지원인은 해임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 준법지원인이 해임되거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 대표이사는 신속하게 새로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5) 회사의 부패방지활동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부패방지책임자)가 총괄하여 관리함
- 6) 회사에 준법통제기준에 따른 준법지원인 또는 컴플라이언스 운영규정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가 있으며, 별도의 부패방지책임자 지정이 없는 경우 준법지원인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부패방지책임자를 겸임함

#1)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3조

제 3 조 부패방지조직 및 부패방지책임자

- ① 부패방지규정에 따른 금품 등 제공의 승인, 제3자 선정에 대한 검토, 부패방지와 관련한 교육·점검, 부패방지신고의 처리 등 부패방지활동은 회사가 지정한 전담 조직(이하 '부패방지조직'이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회사가 별도로 부패방지조직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 운영규정 상의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 주관부서가 부패방지조직이 된다.
- ② 부패방지조직은 그 업무 수행의 적정성 검토, 효과성 증대 등 목적을 위해 법무, 감사 등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조직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③ 회사의 부패방지활동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부패방지책임자'라 한다)가 총괄하여 관리한다. 회사에 준법통제기준 등에 따른 준법지원인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있고 별도의 부패방지책임자 지정이 없는 경우 준법지원인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부패방지 책임자가 된다.
- ④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방지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 7) 현재 회사는 법무실장(판사 출신, 법무실 임원)을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하였으며, 자율준수관리자와 부패방지책임자의 역할을 겸함

#1) 사업보고서

자. 준법지원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3에 의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법통제기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성명 / 생년월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정 (19년월)	'86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판사 '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96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98 창원지법 통영지원(거제시, 고성군) 판사 '99 서울지방법원 판사 '00 변호사 개업(서울회), 법무법인 태평양 '0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자문위원(~'05) '02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03), 서울시 중랑구 법륜고문 '03 대한변협 교육위원회 간사(~'05), 서울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07) '04 국무조정실 지적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 위원(~'05) '05 대한변협 지적재산권 위원회 위원, 서울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위원 '0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병원 특허분야 자문위원 '12~현재 LIG넥스원 법무실장	해당사항 없음
자격요건의 주요내용 (하나 이상 충족 필요)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관련 법령 등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충족(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상법 제542조의13제5항

- 8) 준법지원인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및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지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함
- 9) 또한 준법지원인은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CEO에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현황을 직접 보고할 권한을 가짐

#1) 준법통제기준 제9조

제 9 조 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의무 (1)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1. 준법 및 기업윤리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2.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3.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출요구 및 진술의 요구 4. 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5.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6. 준법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7. 준법 업무 보조 조직의 통솔 및 판단 부서 직원의 인사 제청 8. 기타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2) 준법지원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 및 지원을 구할 수 있다.

#2) 준법통제기준 제10조

제 10 조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 (1)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 (2) 준법지원인은 제1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3) 준법지원인은 준법지원 및 통제 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 내 직급을 가진다.
- (4) 회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6조

제 6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3. 자율준수와 관련된 준법교육 실시
4.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5.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 강구
6.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청
7.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한 자율준수협의회 보고
8.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관리
9.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이사회 보고자료

1. 제 호 의안 :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 보고

1. 제안 사유
2021년 하반기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고함
2. 주요 내용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21년 하반기)』 자료 참조
3. 관련 법규 및 규정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기준』 제20조(이사회 보고)
자율준수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계획 및 운영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

#5) 사업보고서

자.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주요활동내역	처리결과
2021.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임명 및 운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8조)	- 자율준수협의회(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문기구) 위원 임명 및 운영 * 회장 : 1명, 위원 : 4명
2021. 1. ~ 2.	전사 자율준수실천조직 운영(자율준수실 천리더와 실천자 임명) (준법통제기준 제15조)	- 원 단위 조직 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임명(약 310명) - 법무Compliance팀, 전사 자율준수 실천조직 운영
2021. 2.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 인 실시 (윤리규범 제4장)	- 법무Compliance팀, '윤리와 준법 문화 확산 및 준 수' CEO 메시지 당사 인트라넷 공지
	협력회사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 인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1장제1조제(3)항)	- 법무Compliance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실현' CEO Letter 협력사 발송
2021. 2. ~ 3.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3장제3조제(4)항)	- 임직원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캠페 (약 3,100명)
	외부업체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 약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1장제1조제(3)항)	- 외부업체(협력회사 포함)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 약 캠페 (약 160개사)
2021. 3.	윤리/준법경영 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 대상, 컴플라이언스 프 로그램 관련 위험평가분야 서면교육 실시(약 420명)
2021. 3.	전사 위험평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2조)	- 법적 위험의 크기 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함 - 당사 원 단위 조직을 고, 중, 저위험군으로 분류 * 부패방지 고위험조직(25개), 공정 거래 고위험조직(7개), 하도급 고위 험조직(4개) 등
2021. 6.	경기 윤리/준법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전사 임직원 대상, 경기 윤리/준법교육 실시(약 3,100명)
2021. 9.	서면점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7조)	- 고위험군 대상, 법령(부패방지, 공정거래, 하도급, 개인정보 등) 별 서면점검 질문서 답변에 대해 특이 사항 없음 - 단, 답변 정확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점검 실 시 예정
2021. 12.	주요 법령 특별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고위험군 대상, 법령(부패방지, 공정거래, 하도급, 개인정보 등) 별 특별교육 실시(43개 조직)
2021. 10. ~ 12.	현장점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7조)	- 서면점검의 정확성 검증 실시 - 점검을 통해 업무 절차 수정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 템 운영 방안 제고
2021. 1. ~ 12.	윤리/준법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신규 입사자, 경력사원 대상, 윤리/준법 교육 실시 (약 20명)
2021. 1. ~ 12.	신고센터 운영 (준법통제기준 제18조)	- 제보 조사 수행(6건)
2021. 2. ~ 12.	Compliance news 게재	- 회사의 윤리/준법경영 관련 규정, 절차 등을 포함 하여 최근 발생한 윤리/준법 이슈, 사례 등을 서면 형 태로 교육 실시(격주 1회)
2021. 4. ~ 9.	제3자 실사 실시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7조,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별첨2, 3)	- 별첨2에서 규정한 제3자 실사절차서를 통해 제 3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별첨 3에서 규정한 제3자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3자를 자체평가함 - 법무Compliance팀은 제3자의 기초정보 및 자체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제3자의 부패위험의 등급 분류 및 필요한 경우 부적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2회)

#6)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_21.1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1. 제목	LIG넥스원(주) 2021년 하반기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2. 주요내용	1. 2021년 하반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 자율준수 교육 - 전 임직원 대상 정기 준법교육 -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이상 조직을 대상으로 주요 법령 별 교육 실시 ○ 자율준수 점검 - 고위험군 조직 대상 해당 법령 준수여부 모니터링, 사전 법령위반 리스크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서면점검 실시 - 인터뷰 및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한 자율준수 현장 점검 실시 ○ 자율준수 활동 -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협력업체의 인식 수준 조사 -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인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캠페인 등 - Compliance News 게재	
3. 결정일자	2021-12-16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상기 결정일자는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관련공시 -	

#7)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_21.06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1. 제목	LIG넥스원(주) 2021년 상반기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2. 주요내용	2021년 상반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동 실적 - 자율준수 활동 조직 구성 ·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 선정 - 전사 대상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한 팀단위 조직별 위험등급 지정 - 자율준수 서면 점검 진행 - 윤리/준법 집합 교육 · 임원,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 신입/경력직원 등 ○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운영 - 해외 Agent 선정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및 조치 ○ 기타 자율준수 활동 -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인 -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 Compliance News 게재	
3. 결정일자	2021-06-28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상기 3항의 결정일자는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관련공시 -	

10) 회사는 준법지원인과 회사 임원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문기구)를 운영함

11)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

- 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본방침 제시
- ②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 권고 및 자문
- ③ 기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대한 방향제시 등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8조

제 8 조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대표이사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문기구로서 자율준수관리자, 관련 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한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2) 자율준수협의회 보고자료



결	팀 장	실 장	Center장	대표이사
재				

기안 : 김용성 프로

`22년 제1차 자율준수협의회

목 차

I. `21년 자율준수 활동실적

II. `22년 자율준수 활동계획

III. `22년 1/4분기 자율준수 활동계획
첨부1) 자율준수 조직 운영

2022년 1월 일

LIG넥스원 / 법무Compliance팀

2. 내부 통제

2.1. 부패방지 프로그램

- 1) 회사는 부패방지 프로그램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위험평가를 실시함
- 2) 위험평가는 회사가 직면한 부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함
- 3) 준법지원인은 위험평가의 결과를 자율준수협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위험평가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교육 내용을 개선하거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결정함

#1) 준법통제기준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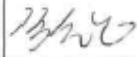
제 12 조 법적 위험의 평가

- (1) 이사회는 회사 전체적인 위험관리체계 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 체계를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한다.
- (2)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 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이 위의 유형화 작업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각 관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 위험평가 서면질의서[e-mil 요청문]

보낸 사람	김 (법무Compliance팀) [@lignex1.com]
보낸 날짜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오전 8:25:16
참조	이 매니저 외 362
제목	《필독》'21년 전사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실시 안내
첨부파일	[참고]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안내.pdf (302.72 KB) 저장 삭제 '21년 전사 자율준수활동 관련 위험평가 서면질의서_배포용.docx (52.94 KB) 저장 삭제
1. 귀 팀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2. 2021년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일환으로 자율준수실천조직 대상 위험평가를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위험평가 실시 ① 실시목적 : 2021년 자율준수활동(교육,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② 작성대상 : 자율준수실천조직 ③ 작성방법 : 첨부 '21년 전사 자율준수활동 관련 위험평가 서면질의서_배포용' 內 질의에 ○/X로 답변 ※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안내 참조 ④ 회신기한 : '21.4/7(수) 14:00 한 ⑤ 회신방법 : 첨부파일인 위험평가 서면질의서를 Word 파일형태로 답변 작성 후 이메일 회신 (문의사항은 법무Compliance팀 이 M 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위험평가 결과 보고서

결	팀 장
재	

전사 위험평가 결과 보고

2021. 4. 29

법무Compliance팀

1. 개요

- 준법통제기준에 의거, 법적 위험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하여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 전사 자율준수활동과 관련하여 각 조직 별 관련 법령과 관련성을 평가하고 법률 위험에 적합한 교육 및 점검 등 통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전사 214개 개별 팀 단위 조직을 대상으로 서면질의서 발송 및 답변서 검토를 통해 위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령 별 위험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등급을 분류함(공정거래, 부패방지 등 4개 법령 기준 8개 분야)

[참고] 전사 위험평가 절차

서면질의 [3월 3주 ~ 4월 1주]	답변검토 [4월 2주]	위험평가 등급조정 [4월 3주]	위험평가 등급확정 [4월 4주]
4개 법률 8개 분야, 법률 위험 서면질의서 작성/배포 [실천조직별 관련성 확인] - 공정거래 / 하도급 - 부패방지 금융제공(국내/외) / 수수 - 방위사업 수출통제 / 원가부정 방지 - 개인정보보호	답변검토 및 수치/정량화 [실천조직별 관련성 확인] 실천조직별 위험등급 도출 김동성/2021/05/06 14:03:38	관리조직단위 별 협의 실천조직별 위험등급 협의/조정	위험평가 등급 확정 및 세부 교육/점검계획 수립

2. 위험평가 주요 결과

- 위험등급 분류기준
 - 개별 조직의 업무범위와 기능을 분석하여 관련 법령과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구분	분류기준	비고
고위험	관련 법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조직	
중위험	관련 법령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높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직	
저위험	관련 법령과의 관련성이 낮은 조직	

#4) 이사회 보고자료

00. 제0호 의안 :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 보고

1. 제안 사유

2021년 상반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고함

2. 주요 내용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21년 상반기)』 첨부자료 참조

3. 관련 법규 및 규정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기준』 제20조(이사회 보고) 자율준수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계획 및 운영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1

3. 자율준수 서면 점검 진행 중(6월4주~7월4주)

분야별 전사 73개 고위험 조직을 대상으로 법령 준수 및 법률 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해 서면질의 문서를 통해 점검 및 조치/개선 방향 제시

서면점검질의서 배포/작성 [6월 4주]	답변 취합 및 검토 [7월 2주]	서면점검 결과 보고 [7월 4주]
• 법령 별 고위험 조직 대상	• 업무수행 적정여부 확인 * 위반행위 확인 시 상세점검 실시	• 서면점검 결과 및 조치/개선사항 등 제시

구분	대상조직	주요 점검항목
공정 거래	입찰담합 7개 조직	•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과정에서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하도급 4개 조직	• 협력회사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부패 방지	금품제공 34개 조직	•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 거래상대방 등에 부당한 금품 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금품수수 8개 조직	•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력회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품 등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방위 산업	원가관리 3개 조직	• 용자금/보조금, 착·중도금, 개발/양산원가 등을 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는지 여부
	수출통제 7개 조직	• 군용물자 등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른 신고, 승인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	10개 조직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폐기 등에 통지 및 동의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자율준수 현장 점검 진행 예정 (하반기)



2

#5) 자율준수협의회 보고자료



결	팀 장	실 장	Center장	대표이사
재				

기안 : 김용성 프로

'22년 제1차 자율준수협의회

목 차

I. '21년 자율준수 활동실적

II. '22년 자율준수 활동계획

III. '22년 1/4분기 자율준수 활동계획
첨부1) 자율준수 조직 운영

2022년 1월 일

LIG넥스원 / 법무Compliance팀

3

'22년 1/4분기 자율준수 활동 계획

6. 위험평가(Risk Assessment)

1) 목적 : 조직별 기능, 업무수행 등의 확인을 통한 법률위험 노출 정도 등급 분류(고, 중, 저 위험)후 법령 및 위반사례 교육을 통해 회사 및 임직원에게 대한 리스크 사전 예방

2) 법률위험 평가기간 및 절차

서면질의 [2월 3주 ~ 4주]

6개 분야 법률위험 관련 서면질의서 작성/배포
[실천조직별 관련성 확인]
- 공정거래 / 하도급
- 부패방지(금품제공/수수)
- 수출통제
- 원가부정 방지
- 개인정보보호

답변검토 [3월 2주]

답변검토 및 수치/정량화 [실천조직별 관련성 확인]
실천조직별 위험등급 도출

위험평가 등급조정 [3월 3주]

관리조직단위 별 협의 실천조직별 위험등급 협의/조정

위험평가 등급확정 [3월 4주]

위험평가 등급 확정 및 세부 교육/점검계획 수립

김용성/2022/01/18 14:04:50

※ 법률위험 등급기준

구분	상세
고위험	법률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적절한 관리 및 통제수단의 부재 시 법률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직 ▶ 전 조직원 대상 교육, 상시 점검 의무 부과
중위험	법률 위험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임직원에게 대한 상시적 교육 등 관리 필요성이 있는 조직 ▶ 수석급 이상 조직원 대상 교육 의무 부과
저위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위험이 무시할 만큼 낮은 조직 ▶ 전사 차원의 교육 시, 교육의무 부과

Open, Connect, Play

7

LIG

#6) 사업보고서

자.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주요활동내역	처리결과
2021. 1.	자율준수협회의의 위원 임명 및 운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8조)	- 자율준수협회의(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문기구) 위원 임명 및 운영 * 회장 : 1명, 위원 : 4명
2021. 1. ~ 2.	전사 자율준수실천조직 운영(자율준수실 천리더와 실천자 임명) (준법통제기준 제15조)	- 원 단위 조직 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임명(약 310명) - 법무Compliance팀, 전사 자율준수 실천조직 운영
2021. 2.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 인 실시 (윤리규범 제4장)	- 법무Compliance팀, '윤리와 준법 문화 확산 및 준 수' CEO 메시지 당사 인프라넷 공지
	협력회사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 인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1장제1조제(3)항)	- 법무Compliance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실현' CEO Letter 협력사 발송
2021. 2. ~ 3.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3장제3조제(4)항)	- 임직원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캠페 (약 3,100명)
	외부업체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 약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1장제1조제(3)항)	- 외부업체(협력회사 포함)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 약 캠페 (약 160개사)
2021. 3.	윤리/준법경영 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 대상, 컴플라이언스 프 로그램 관련 위험평가분야 서면교육 실시(약 420명)
2021. 3.	전사 위험평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2조)	- 법적 위험의 크기 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함 - 당사 원 단위 조직을 고, 중, 저위험군으로 분류 * 부패방지 고위험조직(25개), 공정 거래 고위험조직(7개), 하도급 고위 험조직(4개) 등
2021. 6.	경기 윤리/준법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전사 임직원 대상, 경기 윤리/준법교육 실시(약 3,100명)
2021. 9.	서면점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7조)	- 고위험군 대상, 법령(부패방지, 공정거래, 하도급, 개인정보 등) 및 서면점검 질문서 답변에 대해 특이 사항 없음 - 단, 답변 정확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점검 실 시 예정
2021. 12.	주요 법령 특별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고위험군 대상, 법령(부패방지, 공정거래, 하도급, 개인정보 등) 및 특별교육 실시(43개 조직)
2021. 10. ~ 12.	현장점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7조)	- 서면점검의 정확성 검증 실시 - 점검을 통해 업무 절차 수정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 템 운영 방안 제고
2021. 1. ~ 12.	윤리/준법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신규 입사자, 경력사원 대상, 윤리/준법 교육 실시 (약 20명)
2021. 1. ~ 12.	신고센터 운영 (준법통제기준 제18조)	- 제보 조사 수행(6건)
2021. 2. ~ 12.	Compliance news 게재	- 회사의 윤리/준법경영 관련 규정, 절차 등을 포함 하여 최근 발생한 윤리/준법 이슈, 사례 등을 서면 형 태로 교육 실시(격주 1회)
2021. 4. ~ 9.	제3자 실사 실시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7조,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별첨2, 3)	- 별첨2에서 규정한 제3자 실사절차서를 통해 제 3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별첨 3에서 규정한 제3자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3자를 자체평가함 - 법무Compliance팀은 제3자의 기초정보 및 자체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제3자의 부패위험의 등급 분류 및 필요한 경우 부적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2회)

#7)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_21.6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1. 제목	LIG넥스원(주) 2021년 상반기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2. 주요내용	2021년 상반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동 실적 - 자율준수 활동 조직 구성 ·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 선정 - 전사 대상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한 팀단위 조직별 위험등급 지정 - 자율준수 서면 점검 진행 - 윤리/준법 집합 교육 · 임원,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 신입/경력직원 등 ○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운영 - 해외 Agent 선정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및 조치 ○ 기타 자율준수 활동 -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인 -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 Compliance News 게재
3. 결정일자	2021-06-28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상기 3항의 결정일자는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관련공시 -

- 4)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 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함

#1) 준법통제기준 제12조

제 12 조 법적 위험의 평가

- (1) 이사회는 회사 전체적인 위험관리체계 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 체계를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한다.
- (2)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 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이 위의 유형화 작업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각 판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예시]

- 회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회사의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을 개정함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개정표]

LIG 넥스원(주)		NEX1(M) - 141 - 02																																	
제정일자 : 2018.04.09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개정번호 : 1																																
개정일자 : 2019.02.01			페이지 : 1 / 9																																
■ 개정이력 일람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No.</th> <th rowspan="2">년 월 일</th> <th colspan="2">구 분</th> <th rowspan="2">개 정 (확 인) 내 용</th> <th rowspan="2">기록자</th> </tr> <tr> <th>확인</th> <th>개정</th> </tr> </thead> <tbody> <tr> <td>0</td> <td>'18.04.09</td> <td></td> <td></td> <td>-신규 제정</td> <td>박성훈</td> </tr> <tr> <td>1</td> <td>'19.02.01</td> <td></td> <td>○</td> <td>-부분 개정</td> <td>최장천</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1. 개정내용은 중요한 사항만 기록 하십시오. 2. 개정이력이 1페이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앞의 이력을 삭제하십시오.				No.	년 월 일	구 분		개 정 (확 인) 내 용	기록자	확인	개정	0	'18.04.09			-신규 제정	박성훈	1	'19.02.01		○	-부분 개정	최장천	2						3					
No.	년 월 일	구 분				개 정 (확 인) 내 용	기록자																												
		확인	개정																																
0	'18.04.09			-신규 제정	박성훈																														
1	'19.02.01		○	-부분 개정	최장천																														
2																																			
3																																			

2.2. 부패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과 개선

- 1)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매년 점검하고, 필요 시 개선함
- 2) 회사는 부패와 관련 고위험조직에 대하여 매년 서면점검과 현장점검 등의 점검을 수행함과 동시에 점검 내용을 향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설계, 규정 제정, 개정 및 절차 수정, 교육 내용 개선 등의 자료로 사용함

#1) 준법통제기준 제17조

제 17 조 준법지원인의 준법 점검
(1) 준법지원인은 모든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준법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한다.
(2) 준법지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준법점검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제기된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점검이 있다.
(3) 준법지원인은 효율적인 준법점검을 위하여 부서별로 신고나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의 신고나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다.
(4) 준법지원인은 준법 점검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준법지원인은 준법 여부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통보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9조

제 19 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주관부서 모니터링]

- 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주관부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 모니터링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의 점검인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업무에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시키거나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수검부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 ④ 점검 방법, 점검주기 및 점검대상은 현업부서와 협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모니터링 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반영결과 등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10조 2항

제 10 조 내부 점검 및 모니터링

- ① 부패방지조직은 회사 임직원이 부패방지법령 및 부패방지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부패방지 조직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회사의 부패위험(뇌물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연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 ③ 부패방지조직은 회사 임직원의 부패방지법령 및 부패방지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부패방지 점검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준법통제기준 등에 따르되 준법 통제기준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조직의 결정에 따른다.

- 3) 또한, 준법지원인은 부패방지 프로그램(계획, 결과,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 연 2 회 정기적으로 보고함

※ 1.4.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9) 참고

- 4) 회사는 당사 규정의 적정성, 충분성 및 실효성에 대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을 개선함

- ① 청탁금지법 제정이 확정됨에 따라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을 제정함('18. 4. 9)
- ② 청탁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을 부분개정함('19. 2. 1)

#1)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개정표

LIG 넥스원(주)		NEX1(M) - 141 - 02			
제정일자 : 2018.04.09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개정번호 : 1	페이지 : 1 / 9		
개정일자 : 2019.02.01					
■개정이력 일람표					
No.	년 월 일	구 분		개 정 (확 인) 내 용	기록자
		확인	개정		
0	'18.04.09			-신규 제정	박성훈 최장천
1	'19.02.01		○	-부분 개정	
2					
3					
주) 1. 개정내용은 중요한 사항만 기록 하십시오. 2. 개정이력이 1페이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앞의 이력을 삭제하십시오.					

- 5) 준법지원인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1 년 1 회)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함

#1) 준법통제기준 제21조

제 21 조 유효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판단 체계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2) 준법지원인은 자체적으로 준법 지원 및 점검 체계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3)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매년 준법통제체계의 유효성 평가를 회사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4)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준법통제기준의 내용·법적 위험의 평가 및 관리체계·준법점검 및 보고체계·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체계·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계 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준법통제기준 제22조

제 22 조 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 (1) 이사회는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비나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 (2) 대표이사는 유효성 평가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3)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2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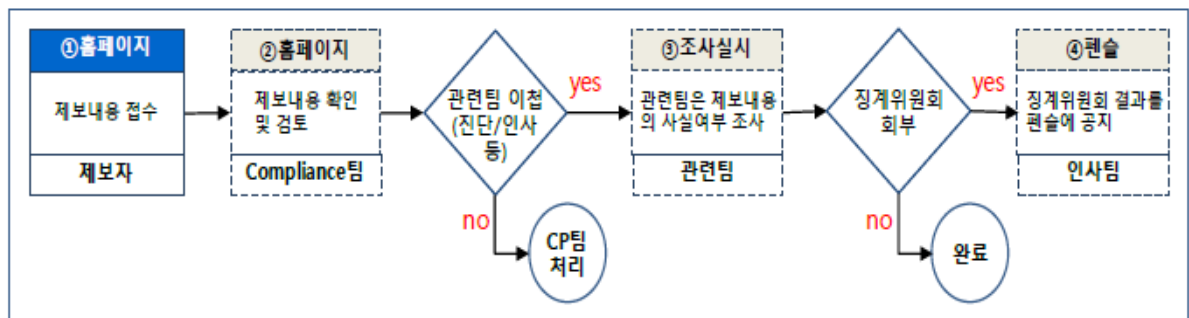
제 27 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유효성 평가]

- 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유효성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3. 부패 조사 시스템

- 1) 제보는 준법지원인 혹은 Compliance 담당자에게 전화,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인트라넷 내 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회사는 부패 혐의에 관해 사건을 조사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음

[부패 조사 process]



(프로세스 설명)

- ① 법무 Compliance 팀은 제보센터,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제보를 접수
- ② 법무 Compliance 팀은 제보된 내용에 따라 감사실이나 인사팀 등 관련 부서에 이첩하여 제보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 ③ 관련부서는 제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파악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④ 법무 Compliance 팀은 제보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와 이메일 회신 등으로 제보자에게 전달

[제보는 법무 Compliance 팀에서 즉시 처리하며, 필요 시 감사실의 협조를 구함]

2) 준법지원인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1) 준법통제기준 제10조

제 10 조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 (1)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 (2) 준법지원인은 제1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3) 준법지원인은 준법지원 및 통제 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 내 직급을 가진다.
- (4) 회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준법지원인은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준법지원인은 제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감사실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1) 준법통제기준 제18조

제 18 조 내부제보

- (1)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행위 등에 관하여, 준법지원인 등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2) 내부제보를 받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내부제보자가 본인이 관련된 위법이나 부정을 제보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고, 모든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2) 준법통제기준 제19조

제 19 조 위반 시의 처리

- (1)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중지·개선·시정·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등과 상의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표이사 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준법지원인은 위의 보고 또는 건의 전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해당 임직원에게 관련 행위의 중지·개선·시정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회사는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 (3) 준법지원인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재발방지방안이 결정되면 준법지원인은 이를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선 시에 반영한다.

#3)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21조

제 21 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임직원은 법규 위반 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이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주관부서에 제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 사항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주관부서에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나 위반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자율준수 관리자는 내부 제보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제보자가 내부 제보로 인하여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11조

제 11 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치

- ①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법령 및 부패방지규정을 포함한 회사의 내규, 지침 등의 위반이 의심되거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부패방지조직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는 기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부패방지조직에 직접 접수하거나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② 부패방지조직은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등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③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신고내용, 신고자의 신상, 신고에 포함된 다른 임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임직원이 부패방지법령 및 부패방지규정 등에 따라 뇌물 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거부로 인하여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뇌물 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거부하거나 이를 신고한 제3자가 이로 인하여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신고센터라는 별도의 시스템에서 제보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함
- 6) 제보자가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 신고센터 - 제보확인하기에서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1) 홈페이지 – 윤리/준법 – 신고센터 – 제보확인하기

윤리/준법

상생경영

환경경영

인권/근로자

사회공헌

품질 경영

윤리경영철학

규정

활동

신고센터

정당한 제보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알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는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했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보하기

제보 확인

윤리/준법

상생경영

환경경영

인권/근로자

사회공헌

품질 경영

윤리경영철학

규정

활동

신고센터

제보내역 확인

- 제보 등록 시 회신방법을 '홈페이지 확인'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 또는 전화로 회신 요청을 한 경우, 제보 시 등록한 정보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메일

@

직접입력 ▼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조회

돌아가기

2.4. 부패 조사 시스템 품질 보증

- 1) 회사는 부패 사건 조사에 있어 적절성을 보증함
- 2) 조사하는 과정에서 준법지원인은 필요한 경우 감사실의 조력을 받음
- 3) 감사실장은 법조인(검사) 출신의 고위급 임원으로, 감사실의 정기 감사, 특별 감사 등의 감사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실의 모든 직원은 감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이수함

#1) 감사사 자격증



#2) 감사실 교육 수행 목록

대상자	과정명	교육기관	교육일자	이수시간
한	신기법기반 지능화된 종합감사시스템/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한국감사협회	2021-11-09 ~ 2021-11-12	6hr
최	신기법기반 지능화된 종합감사시스템/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한국감사협회	2021-11-11 ~ 2021-11-11	6hr
양	E-Learning 내부감사전문교육	한국감사협회	2021-12-14 ~ 2021-12-17	6hr
진	ISA 회계감사의 모든것	휴넷	2021-01-01 ~ 2021-01-31	20hr
	CIA문제풀이 과정	한국감사협회	2021-10-18 ~ 2021-12-31	10hr
	CIA과정 (정규-종합반)	라이지움	2021-04-07 ~ 2021-12-31	153hr
	2021 외부감사대비 K-IFRS 결산 전문가 양성과정	삼성멀티캠퍼스	2021-02-01 ~ 2021-02-28	20hr
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서 내부감사부서의 책임	한국감사협회	2021-03-09 ~ 2021-03-09	3hr
	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업무감사	한국감사협회	2021-03-09 ~ 2021-03-09	3hr
	성공적인 비대면 감사 방법	한국감사협회	2021-08-09 ~ 2021-08-09	3hr
	내부감사를 위한 재무정보의 활용	한국감사협회	2021-12-14 ~ 2021-12-14	3hr
	리스크관리의 신조류	한국감사협회	2021-12-14 ~ 2021-12-14	3hr
전	명탐정 지킬E와 함께하는 감사실무	멀티캠퍼스	2021-12-01 ~ 2021-12-31	20hr
강	2021 회계관리2급 회계원리 기본이론	멀티캠퍼스	2021-05-01 ~ 2021-05-31	20hr

- 4) 제보자, 조사를 받는 사람, 혹은 사건 관련자는 조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이사회 내
독립적인 위원회)나 감사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5) 감사실장은 감사 계획 및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함
- 6) 감사실은 감사위원회(이사회 내 독립적인 감사에 관해 책임지는 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함

#1)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3조

제13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인은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를 종료하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시점으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5. 부패 조사의 적절성 보장

- 1) 준법지원인은 정기적(1 년 2 회)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20조

제 20 조 [이사회 보고]

자율준수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계획 및 운영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또한 준법지원인은 조사를 통해 발견한 부패에 관한 사실을 관련 당국에 신고할 책임을 가짐

#1) 홈페이지 - 윤리/준법 - 신고센터

제보처리 절차 XX

- 제보자가 제보를 접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별도의 절차 없이 CEO, 법무실장 (준법지원인, 자율준수관리자), Compliance팀원이 즉시 확인 가능
- Compliance팀은 제보자와 즉시 연락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제보내용을 법무실장(준법지원인/자율준수관리자) 및 CEO 보고 및 감사실 이관
 - ※ 익명의 경우, 해당 제보내용을 감사실(독립적인 부서, 조직도 참고)로 즉시 송부
 - 당사의 감사실 인원은 감사사 자격증 보유
- 주요 사안일 경우 진단팀에서 진단 후 결과를 CEO 보고 및 이사회 보고
 - 회사규정을 위반한 자는 자체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
 - 법률적 위반사항일 경우 법무실장은 위반사항을 재확인 후 관계당국에 신고
 - 제보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단결과를 확인 가능(익명신고자도 확인 가능)
 - 징계 처리 결과는 회사 공지사항에 공개
- 일반 사안의 경우, Compliance팀에서 조사 후 법무실장(준법지원인/자율준수관리자)/CEO 보고
- Compliance팀과 감사실은 제보와 관련된 내용(조사부터 징계까지)을 전산화하여 보관(5년)
 - ※ 해당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경우, 징계가 가능함

2.6. 부패 조사의 공개

- 1) 2021 년 회사의 부패와 관련된 조사는 아래와 같음

신고 건수(내부고발 포함)	6
조사 착수 건수	5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건수	0

3. 임직원 지원

3.1. 일반 부패방지 교육 프로그램

- 1) 회사는 매년 최소 1 시간동안 임직원에게 컴플라이언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함
- 2) 또한 회사는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 운영함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6조

제 16 조 [교육 실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자율준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준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 ④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주관부서는 교육계획을 품의하고 교육일정을 진행하며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7조

제 17 조 [교육 내용]

자율준수 관리자는 임직원의 법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교육
2. 각 부서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3. 공정거래, 부정부패 등 법 위반 발생가능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특화교육
4. 법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
5. 기타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 3) 회사는 모든 운영 국가에 적절한 언어를 통하여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신규입사자 교육, 고위험군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준법교육을 실시함

#1) 준법통제기준 제14조

제 14 조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 (1)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취급 업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한다.
- (2) 준법지원인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준법 (Compliance)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 준법교육: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준법교육
 2. 신규입사자 준법교육: 신규채용(신입/경력)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준법교육
 3. 특별 준법교육: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거나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준법교육
- (3) 준법지원인은 on-line이나 e-learning 등의 방법으로 제2항의 준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4)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 (5) 준법지원인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운영과 별도로 업무상 법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4) 또한 회사는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임직원에게 대해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함

#1)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9조

제 9 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① 부패방지조직은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임직원에게 대해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부패방지 교육의 실시대상, 방법 및 주기에 대해서는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등을 따르되 준법통제기준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조직의 결정에 따른다.
- ③ 동조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실시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교육을 받았으며, 부패방지규정의 준수를 서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할 수 있다.

- 5) 교육 내용은 회사의 윤리/준법경영, 청탁금지법,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회사 제보시스템 이용방법(제보 옵션), 부패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함

#1) 교육자료

**1** 부패방지 (국내/제공)**☐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2. '금품등의 제공'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Open, Connect, Play

3 / 60

LIG

4 부패방지(해외/제공)**☐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제공 금지**

- ① (국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뇌물죄(X)
- ② (현지) 뇌물죄
- ③ (해외) 미국 FCPA, 영국 Bribery Act

Open, Connect,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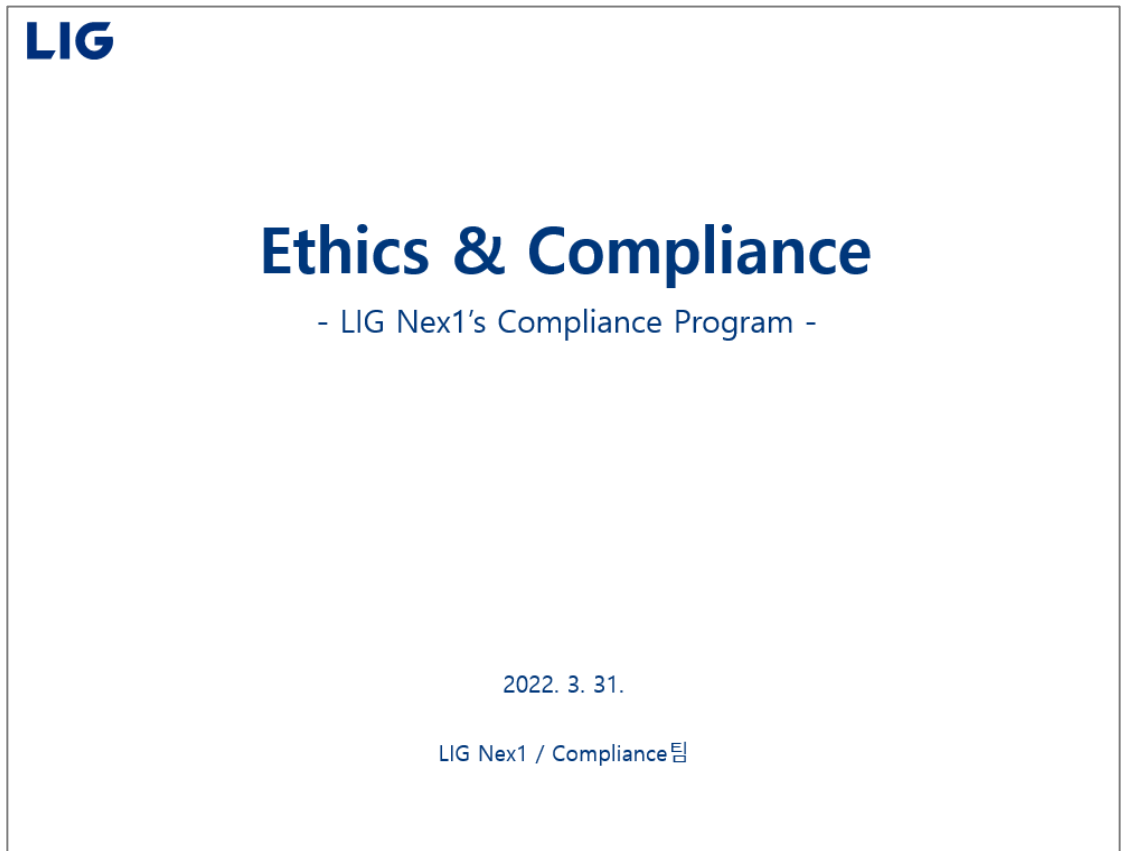
43 / 60

LIG

- 6) 교육 내용은 매년 실시하는 감사 및 점검의 결과, 교육 대상자의 평가지, 설문지 등을 통해서 개선함

7) 현지채용인에게 입사 시 영어로 교육을 실시함(필요 시 서면교육 수행함)

#1) 현지채용인 교육자료



3.2. 임직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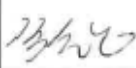
- 1) 법무 Compliance 팀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매년 1 회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이 결과를 자율준수협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함
- 2) 회사는 위험평가의 결과에 따라 교육을 설계하고 수행함

#1) 준법통제기준 제12조

제 12 조 법적 위험의 평가

- (1) 이사회는 회사 전체적인 위험관리체계 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 체계를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한다.
- (2)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 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이 위의 유형화 작업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각 판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 위험평가 실시 결과 보고서

결	팀 장
재	

전사 위험평가 결과 보고

2021. 4. 29

법무Compliance팀

1. 개요

- 준법통제기준에 의거, 법적 위험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하여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 전사 자율준수활동과 관련하여 각 조직 별 관련 법령과 관련성을 평가하고 법률 위험에 적합한 교육 및 점검 등 통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전사 214개 개별 팀 단위 조직을 대상으로 서면질의서 발송 및 답변서 검토를 통해 위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령 별 위험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등급을 분류함(공정거래, 부패방지 등 4개 법령 기준 8개 분야)

[참고] 전사 위험평가 절차

서면질의 [3월 3주 ~ 4월 1주]	답변검토 [4월 2주]	위험평가 등급조정 [4월 3주]	위험평가 등급확정 [4월 4주]
4개 법률 8개 분야, 법률 위험 서면질의서 작성/배포 [실천조직별 관련성 확인] - 공정거래 / 하도급 - 부패방지 - 금품제공(국내/외) / 수수 - 방위사업 - 수출통제 / 원가부정 방지 - 개인정보보호	답변검토 및 수치/정량화 [실천조직별 관련성 확인] 실천조직별 위험등급 도출	관리조직단위 별 협의 실천조직별 위험등급 협의/조정 김용성/2021/05/06 14:03:38	위험평가 등급 확정 및 세부 교육/점검계획 수립

2. 위험평가 주요 결과

- 위험등급 분류기준
 - 개별 조직의 업무범위와 기능을 분석하여 관련 법령과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구분	분류기준	비고
고위험	관련 법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조직	
중위험	관련 법령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높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직	
저위험	관련 법령과의 관련성이 낮은 조직	

#3) 교육 실시[e-mail]

보낸 사람	김 (법무Compliance팀) [@lignex1.com]
보낸 날짜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오후 5:09:08
받는 사람	P 사업 [@lignex1.com] 외 6
제목	[정기준법교육] 2021년도 정기준법교육 서면 대체 실시
첨부파일	 2021년도 LIG넥스원 정기준법교육.pdf (1.68 MB) 저장 삭제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상반기 정기준법교육을 실시하고자 본 메일을 발송드립니다. 금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준법교육자료를 첨부하여 송부 드리오니, 업무 시 관련법령 위반이 없도록 본 메일 수신자 전원께서는 교육자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자료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무Compliance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실 김 변호사 드림	

보낸 사람	김 (법무Compliance팀) [@lignex1.com]
보낸 날짜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오후 5:20:38
받는 사람	P 사업 팀 [@lignex1.com] 외 44
제목	[특별준법교육] 2021년도 특별준법교육 서면 대체 실시
첨부파일	 2021년도 LIG넥스원 특별준법교육.pdf (2.18 MB) 저장 삭제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특별준법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며, 금번 교육도 코로나로 인하여 서면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준법교육자료를 첨부하여 송부 드리오니, 본 메일 수신자 전원께서는 업무 시 관련법령 위반이 없도록 교육자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자료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무Compliance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실 김 드림	

※ 코로나 19로 인해 서면교육 실시

#4) 이사회 보고자료

1. 제 호 의안 :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 보고

1. 제안 사유

2021년 하반기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고함

2. 주요 내용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21년 하반기)』 자료 참조

3. 관련 법규 및 규정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기준』 제20조(이사회 보고)

자율준수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계획 및 운영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

Open, Connect, Play

1 / 1

LIG

I. 자율준수 교육

1. 자율준수(준법)교육

○ 방위사업 및 계약관련 특별교육과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이상 조직을 대상으로 주요 법령 별 교육을 실시함

구분	대상법령	세부교육계획	대상조직	실시 월	비 고
집 합 교 육	방위사업 및 계약	- 제안, 입찰, 협상, 계약체결 관련 법령 등 - 방산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의 이해 - 수정계약(절차, 효력, 증액 등), 계약의 종료 - 분쟁해결방안(국민신문고, 권익위, 옴부즈만, 민사소송/행정소송/가처분 등) - 부정당제재 사유 및 절차, 효과 - 방사청 감독관실, 감사원 등의 감사절차	국내사업조직 전체	21년 10월 (동영상)	국내사업 조직 대상 특별 교육
	부패방지 (금품제공/수수)	- 국내외 부패방지법령 소개 - 주요 위반사례 안내 - 당사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설명	국내 사업조직, 해외사업조직, 구매조직	21년 10월 (동영상)	고위험 조직
	공정거래 (입찰담합)	- 입찰담합 관련 법령 및 사례 공유 - 입찰 관련 컨소시엄 구성 시 고려 사항	국내사업조직 전체		고위험 조직

※ 동영상 강의 강사: 법무Compliance팀 김정수변호사, 김보영변호사

[근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임직원 교육 관련)

제16조[교육실시]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Open, Connect, Play

1

LIG

#5) 자율준수협의회 보고자료

LIG

결	팀 장	실 장	Center장	대표이사
재	김민우	김민우	김민우	김민우

기안 : 이은미 프로

`22년 제2차 자율준수협의회

목 차

I. `22년 1/4분기 자율준수 활동실적

이은미/2022/04/29 14:14:43

II. `22년 2/4분기 자율준수 활동계획

2022년 4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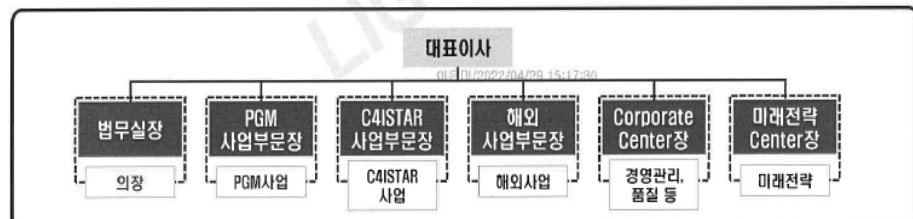
LIG 넥스원 / 법무Compliance팀

1 `22년 1/4분기 자율준수 활동 실적

2. 윤리/준법경영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시기	비고
신규 입사자 (신입, 경력)	- 당사 윤리/준법경영 필요성, 실천방법 - 방위사업 특수성 및 관련 법률 개관 등	1월 ~ 2월	180명 수강
영입 임원	- 당사 윤리/준법경영 필요성, 실천방법 - 방위사업 특수성 및 관련 법률 개관 등	수시	On-line 교육
자율준수 실천자/실천리더	- Compliance program 소개 - Compliance 시스템 및 위험 정의 - 위험평가 목적, 수행방안 등	3월	441명 수강

3. 자율준수협의회 및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 구성



○ 자율준수협의회 구성(6명) : 법무실장, 각 Center장, 각 부문장

○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448명) : 팀장(단장) / 팀 조직 별 1명 선정

#6) 사업보고서

자.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주요활동내역	처리결과
2021. 1.	자율준수협회의 회원 임명 및 운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8조)	- 자율준수협회의(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문기구) 회원 임명 및 운영 * 회장 : 1명, 위원 : 4명
2021. 1. ~ 2.	전사 자율준수실천조직 운영(자율준수실 천리더와 실천자 임명) (준법통제기준 제15조)	- 원 단위 조직 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임명(약 310명) - 법무Compliance팀, 전사 자율준수 실천조직 운영
2021. 2.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 인 실시 (윤리규범 제4장)	- 법무Compliance팀, "윤리와 준법 문화 확산 및 준 수" CEO 메시지 당사 인트라넷 공지
	협력회사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 인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1장제1조제(3)항)	- 법무Compliance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실현" CEO Letter 협력사 발송
2021. 2. ~ 3.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3장제3조제(4)항)	- 임직원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캠페 (약 3,100명)
	외부업체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 약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1장제1조제(3)항)	- 외부업체(협력회사 포함)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 약 캠페 (약 160개사)
2021. 3.	윤리/준법경영 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 대상, 컴플라이언스 프 로그램 관련 위험평가분야 서면교육 실시(약 420명)
2021. 3.	전사 위험평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2조)	- 법적 위험의 크기 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함 - 당사 원 단위 조직을 고, 중, 저위험군으로 분류 * 부패방지 고위험조직(25개), 공정 거래 고위험조직(7개), 하도급 고위 험조직(4개) 등
2021. 6.	경기 윤리/준법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전사 임직원 대상, 경기 윤리/준법교육 실시(약 3,100명)
2021. 9.	서면점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7조)	- 고위험군 대상, 법령(부패방지, 공정거래, 하도급, 개인정보 등) 및 서면점검 질문서 답변에 대해 특이 사항 없음 - 단, 답변 정확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점검 실 시 예정
2021. 12.	주요 법령 특별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고위험군 대상, 법령(부패방지, 공정거래, 하도급, 개인정보 등) 및 특별교육 실시(43개 조직)
2021. 10. ~ 12.	현장점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7조)	- 서면점검의 정확성 검증 실시 - 점검을 통해 업무 절차 수정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 템 운영 방안 제고
2021. 1. ~ 12.	윤리/준법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신규 입사자, 경력사원 대상, 윤리/준법 교육 실시 (약 20명)
2021. 1. ~ 12.	신고센터 운영 (준법통제기준 제18조)	- 제보 조사 수행(6건)
2021. 2. ~ 12.	Compliance news 게재	- 회사의 윤리/준법경영 관련 규정, 절차 등을 포함 하여 최근 발생한 윤리/준법 이슈, 사례 등을 서면 형 태로 교육 실시(격주 1회)
2021. 4. ~ 9.	제3자 실사 실시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7조,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별첨2, 3)	- 별첨2에서 규정한 제3자 실사절차서를 통해 제 3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별첨 3에서 규정한 제3자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3자를 자체평가함 - 법무Compliance팀은 제3자의 기초정보 및 자체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제3자의 부패위험의 등급 분류 및 필요한 경우 부적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2회)

#7)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_21.1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1. 제목	LIG넥스원(주) 2021년 하반기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2. 주요내용	1. 2021년 하반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 자율준수 교육 - 전 임직원 대상 정기 준법교육 -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이상 조직을 대상으로 주요 법령 별 교육 실시 ○ 자율준수 점검 - 고위험군 조직 대상 해당 법령 준수여부 모니터링, 사전 법령위반 리스크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서면점검 실시 - 인터뷰 및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한 자율준수 현장 점검 실시 ○ 자율준수 활동 -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협력업체의 인식 수준 조사 -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인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캠페인 등 - Compliance News 개재
3. 결정일자	2021-12-16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상기 결정일자는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관련공시 -

- 3) 회사는 위험평가의 결과를 근거로 맞춤형 부패방지 교육을 제공함
- 4) 고위험조직(마케팅, 영업, 계약, 영업 등) 의 경우, 회사는 매년 해당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실시함

#1) 고위험조직 부패방지 교육자료

LIG

2021년 LIG넥스원 특별준법교육

Compliance

1 부패방지 (국내/제공)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들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
→ 위반시 공직자들은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

- 부정청탁의 신고

- (1) 최초 청탁 :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표시
- (2) 그 이후의 청탁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
→ 위반시 공직자들은 **징계** 대상

Open, Connect, Play

5 / 60

LIG

4 부패방지(해외/제공)

FCPA

FCPA란?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반부패조항(ANTI-BRIBERY PROVISION)
- 회계조항(ACCOUNTING PROVISIONS)

Open, Connect, Play

44 / 60

LIG

- 5) 중간관리자의 경우, 매년 팀원이 윤리적 딜레마 혹은 법률위반과 같은 상황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회사는 관련 교육 실시함

#1) 중간관리자 부패방지 교육자료

'21년 중간관리자, Compliance 교육



1. 윤리경영의 의미

➤ 윤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 윤리경영이란?

기업이 지켜야 할 도리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Open, Connect, Play

3 / 23

LIG

- 6) 이사회는 경우, 회사의 의사 결정 및 윤리기준 설정하고 최고 수준의 윤리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17 년도 교육 실시하였음

3.3. 부패방지 교육 프로그램 효율성 점검

- 1) 교육 종료 후 법무 Compliance 팀은 교육 대상자와의 인터뷰, 설문지 등을 통해 교육 난이도를 조절하고 교육 내용을 개선함
- 2) 준법지원인은 매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유효성 평가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행함

#1) 준법통제기준 제21조

제 21 조 유효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판단 체계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2) 준법지원인은 자체적으로 준법 지원 및 점검 체계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3)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매년 준법통제체계의 유효성 평가를 회사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4)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준법통제기준의 내용·법적 위헌의 평가 및 관리체계·준법점검 및 보고체계·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체계·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계 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준법통제기준 제 22 조

제 22 조 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 (1) 이사회는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비나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 (2) 대표이사는 유효성 평가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3)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27 조

제 27 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유효성 평가]

- 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연두업무보고자료

2022년 연두업무보고

2022.1.11. 법무실(Compliance)



III. Compliance

1. '21년 자율준수 활동실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 자율준수 조직 구성 및 운영
- 전 부서 대상 주요 법령별 리스크 평가
- 준법점검 실시
- 윤리/준법경영 협력업체대상 인식수준 설문조사

■ 전사 자율준수 조직 구성 및 운영

-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구성(총5명)
(법무실장(의장), Corporate Center장, PGM사업부문장, C4iSTAR사업부문장, 해외사업부문장)
- 자율준수 간담회 : 분기별[1차('21.1), 2차('21.5), 3차('21.8), 4차('21.11)]
- 자율준수 리더 및 실천자 선정: **213개 팀단위로 리더/실천자 각 1명씩 선정**

■ 전 부서 대상 주요 법령별 리스크 평가

- 부패방지, 공정거래, 하도급, 수출통제, 원가부정, 개인정보보호 등
- 팀의 기능, 업무 범위 등에 따른 **법률위험 노출정도** 확인
- : 고위험군 73개, 중위험군 83개

■ 준법점검 실시

- 선면점검(상반기), 현장점검(하반기)
- 부패방지, 공정거래, 하도급, 수출통제, 원가부정, 개인정보보호 등

■ 윤리/준법경영 협력업체대상 인식수준 설문조사

- 하도급업체 315개사 중 165개사 응답(52.4%)
- 윤리경영 긍정 응답율(90.2%), ('20년 : 89.1%, '19년 : 81.5%, '18년 : 76.0%)
- 준법경영: 특 이사항 없음

#5) 이사회 보고자료

1. 제 호 의안 :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 보고

1. 제안 사유

2021년 하반기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고함

2. 주요 내용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21년 하반기)』 자료 참조

3. 관련 법규 및 규정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기준』 제20조(이사회 보고)

자율준수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계획 및 운영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

Open, Connect, Play

1 / 1

LIG

IV. 진행중인 업무

1. 자율준수(준법) 특별교육(집합교육)

○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준법교육과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이상 조직을 대상으로 주요 법령 별 교육을 실시함

구분	내 용	대 상	시 기	비 고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활용/폐기 입출입자 개인정보 수집/활용/폐기	인사, HR, 경영관리 총무/환경안전	12월	교육자료 E-mail 공유
부패방지(국내), 공정거래(하도급)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주요 위반사례 하도급 법령, 분쟁조정 및 사례 등	양산구매, 개발구매, 전자전사업부 외 24개팀		
원가관리	원가 부정에 따른 제재법령 제재에 따른 경영 Impact	양산원가, 개발원가 협력사원가		
수출통제	수출인허가 사항 수출법령 및 사례 등	해외사업조직		

2. 자율준수 현장 점검

○ 현장점검 일정 : '21년 12월

○ 현장점검 방법 : 인터뷰 및 관련 자료 검토

○ 대상조직 : 부패방지 법령 관련 고위험 이상 조직 대상

Open, Connect, Play

7

LIG

#6) 자율준수협의회 보고자료



결	팀 장	실 장	Center장	대표이사
재				

기안 : 김용성 프로

'22년 제1차 자율준수협의회

목 차

I. '21년 자율준수 활동실적

II. '22년 자율준수 활동계획

III. '22년 1/4분기 자율준수 활동계획
첨부1) 자율준수 조직 운영

2022년 1월 일

LIG넥스원 / 법무Compliance팀

1

'21년 자율준수 활동실적

1.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 자율준수 조직 구성 및 운영
- 자율준수 협의회 운영, 이사회 보고
- 단위조직대상 위험평가/ 위험등급 지정
- 주요 법령별 특별교육
- 자율준수 실행 점검 및 개선사항 제시
- 자율준수 문화 내재화

- 자율준수 조직 구성 및 운영
 - 자율준수협의회, 자율준수 리더/실천자 구성(1월) 및 교육(3월)
- 자율준수 협의회 운영(분기별), 이사회 보고(6월, 12월)/공시
 - 계획 및 실적 보고(협의회), 반기별 실적 보고(이사회)
- 단위조직을 대상으로 위험평가를 통한 위험등급 지정(전사 208개 팀)
 - 고위험 73개, 중위험 83개
- 주요 법령별 특별교육(서면교육 대체)
 - 고 위험군 73개 조직 대상 법령교육
 - 부패방지(금품제공/수수)42, 공정거래11, 하도급4, 수출통제7, 원가부정3, 개인정보보호10
- 자율준수 실행 여부 점검 및 개선사항 제시
 - 서면 점검 : 현업이 직접 Check list를 통해 법령준수여부 점검(상반기)
 - 현장 점검 : 인터뷰, 관련서류 등에 근거한 법령준수 점검(하반기)
 - [관련규정] 준법통제기준 제17조,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9조
- 자율준수 문화 내재화
 - Compliance게시판 운영(CEO메시지, 공지사항, 질의/응답, 교육자료 등 수록)
 - Compliance News 게시(법령 및 사례를 통한 임직원 행동 안내)

2. 외부기관 평가 대응

○ 국제투명성기구 평가 대응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 국제적/국가적 부패방지를 위해 1993년 창립된 공익비영리단체(NGO)

- TI평가 대응
 - TI대응
 - * 홈페이지의 윤리/준법경영 수정/보완(국문, 영문)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재정비 (진행중)
 - 10개 범주 평가 대응
 - ①Leadership and Organisational Culture ② Internal Controls ③ Support to Employees
 - ④ Conflict of Interest ⑤ Customer Engagement ⑥ Supply Chain Management
 - ⑦ Agents, Intermediaries and Joint Ventures ⑧ Offsets ⑨ High Risk Markets ⑩ State-Owned Enterprises

Open, Connect, Play

1

LIG

#7) 사업보고서

자.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주요활동내역	처리결과
2021. 1.	자율준수협회의의 위원 임명 및 운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8조)	- 자율준수협회의(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문기구) 위원 임명 및 운영 * 회장 : 1명, 위원 : 4명
2021. 1. ~ 2.	전사 자율준수실천조직 운영(자율준수실 천리더와 실천자 임명) (준법통제기준 제15조)	- 원 단위 조직 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임명(약 310명) - 법무Compliance팀, 전사 자율준수 실천조직 운영
2021. 2.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 인 실시 (윤리규범 제4장)	- 법무Compliance팀, "윤리와 준법 문화 확산 및 준 수" CEO 메시지 당사 인프라넷 공지
	협력회사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 인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1장제1조제(3)항)	- 법무Compliance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실천" CEO Letter 협력사 발송
2021. 2. ~ 3.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3장제3조제(4)항)	- 임직원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캠페 (약 3,100명)
	외부업체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 약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1장제1조제(3)항)	- 외부업체(협력회사 포함)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 약 캠페 (약 160개사)
2021. 3.	윤리/준법경영 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 대상, 컴플라이언스 프 로그램 관련 위험평가분야 서면교육 실시(약 420명)
2021. 3.	전사 위험평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2조)	- 법적 위험의 크기 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함 - 당사 원 단위 조직을 고, 중, 저위험군으로 분류 * 부패방지 고위험조직(25개), 공정 거래 고위험조직(7개), 하도급 고위 험조직(4개) 등
2021. 6.	경기 윤리/준법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전사 임직원 대상, 경기 윤리/준법교육 실시(약 3,100명)
2021. 9.	서면점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7조)	- 고위험군 대상, 법령(부패방지, 공정거래, 하도급, 개인정보 등) 별 서면점검 질문서 답변에 대해 특이 사항 없음 - 단, 답변 정확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점검 실 시 예정
2021. 12.	주요 법령 특별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고위험군 대상, 법령(부패방지, 공정거래, 하도급, 개인정보 등) 별 특별교육 실시(43개 조직)
2021. 10. ~ 12.	현장점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7조)	- 서면점검의 정확성 검증 실시 - 점검을 통해 업무 절차 수정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 템 운영 방안 제고
2021. 1. ~ 12.	윤리/준법교육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신규 입사자, 경력사원 대상, 윤리/준법 교육 실시 (약 20명)
2021. 1. ~ 12.	신고센터 운영 (준법통제기준 제18조)	- 제보 조사 수행(6건)
2021. 2. ~ 12.	Compliance news 게재	- 회사의 윤리/준법경영 관련 규정, 절차 등을 포함 하여 최근 발생한 윤리/준법 이슈, 사례 등을 서면 형 태로 교육 실시(격주 1회)
2021. 4. ~ 9.	제3자 실사 실시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7조,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별첨2, 3)	- 별첨2에서 규정한 제3자 실사절차서를 통해 제 3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별첨 3에서 규정한 제3자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3자를 자체평가함 - 법무Compliance팀은 제3자의 기초정보 및 자체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제3자의 부패위험의 등급 분류 및 필요한 경우 부적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2회)

#8)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_21.1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1. 제목	LIG넥스원(주) 2021년 하반기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2. 주요내용	1. 2021년 하반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 자율준수 교육 - 전 임직원 대상 정기 준법교육 -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이상 조직을 대상으로 주요 법령 별 교육 실시 ○ 자율준수 점검 - 고위험군 조직 대상 해당 법령 준수여부 모니터링, 사전 법령위반 리스크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서면점검 실시 - 인터뷰 및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한 자율준수 현장 점검 실시 ○ 자율준수 활동 -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협력업체의 인식 수준 조사 -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인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캠페인 등 - Compliance News 개재
3. 결정일자	2021-12-16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상기 결정일자는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관련공시 -

3.4. 부패방지 촉진을 위한 임직원 인센티브

- 1)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 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에 포상이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음

#1) 준법통제기준 제23조

제 23 조 임직원의 포상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이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

- 2) 또한 자율준수관리자(현 준법지원인)는 모범적으로 자율준수를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자나 부서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28조

제 28 조 [인센티브 등]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범적으로 자율준수를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자나 부서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3.5. 비윤리적 행위를 거부한 임직원 및 제보자 보호

- 1) 회사는 뇌물 제공, 부정청탁 등의 부패행위를 거부하거나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직원이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함

#1)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 11 조

제 11 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치

- ①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법령 및 부패방지규정을 포함한 회사의 내규, 지침 등의 위반이 의심되거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부패방지조직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는 기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부패방지조직에 직접 접수하거나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② 부패방지조직은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등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③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신고내용, 신고자의 신상, 신고에 포함된 다른 임직원에게 관한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임직원이 부패방지법령 및 부패방지규정 등에 따라 뇌물 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거부로 인하여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뇌물 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거부하거나 이를 신고한 제3자가 이로 인하여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사는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하는 직원이나 뇌물 및 부패사건을 신고한 직원 또는 제 3 자 및 공급업체 등의 직원들이 보호받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를 명시함

#1) 홈페이지 – 윤리/준법 – 대표이사 실천 선언문

03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하는 직원이나 뇌물 및 부패사건을 신고한 직원 또는 제3자 및 공급업체 등의 직원들이 보호받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2) 홈페이지 – 윤리/준법 – 신고센터

제보자 보호 정책

XX

- 제보자 보호

-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 비밀 보장
- 제보자의 신분 누설 및 제보자 색출행위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 (회사의 손실이 예견된다 할지라도)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 보호

-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의 신분 보장
-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의 신분 누설 및 신분 색출행위 금지
-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 당사는 뇌물 및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차원에서의 Compliance(법무실)를 시행하고 있으며, 뇌물 및 부패혐의 또는 사건을 추적/조사/대응하는 정도경영실을 운영하고 있음

담당자 연락처

XX

- TEL 031)8026-4981
- FAX 031)8026-7076
- 우편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3 LIG넥스원(주) Compliance 담당자

3.6. 임직원 및 제보자에 대한 보복 금지

- 회사는 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제보에 따른 사실확인, 징계 등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익명성을 보장 하며, 제보자가 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2) 제보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경우 법무 Compliance 팀은 즉시 조사에 착수함

#1) 윤리규범 실천지침 별첨5

별첨 5

내부 제보절차

- 윤리규범실천지침 전문 제3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은 아래 열거한 내용과 같이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규범 위반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윤리규범 위반을 강요받은 경우, 사내제보시스템,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접근 가능한 수단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i. 회사의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금전, 선물, 접대, 편의 등을 수수한 경우
 - ii. 회사의 임직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금전, 선물, 접대, 편의 등을 제공한 경우
 - iii.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 선물, 접대, 편의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 iv. 회사의 임직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협력업체를 차별하거나,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 v. 회사의 임직원이 성희롱, 차별, 학대 및 기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 vi. 회사의 임직원이 법령 및 기타 회사의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내부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제보사실은 사실확인, 징계 등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내부제보자가 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내부제보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경우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는 조사결과 내부제보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해당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 외의 자로 인해 내부제보자의 신분이 노출 되는 경우,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2) 홈페이지 - 윤리/준법 - 신고센터



정당한 제보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는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했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대상	▽
제보처리 절차	▽
제보자 보호 정책	XX
· 제보자 보호 -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 비밀 보장 - 제보자의 신분 누설 및 제보자 색출행위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 (회사의 손실이 예견된다 할지라도)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 보호 -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의 신분 보장 -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의 신분 누설 및 신분 색출행위 금지 -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 당사는 뇌물 및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차원에서의 Compliance(법무실)를 시행하고 있으며, 뇌물 및 부패혐의 또는 사건을 추적/조사/대응하는 정도경영실을 운영하고 있음	
담당자 연락처	XX
· TEL 031)8026-4981 · FAX 031)8026-7076 · 우편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3 LIG넥스원(주) Compliance 담당자	

#3) 협력업체구매포탈 – 고충상담창구


모든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 고충상담을 하신 분이냐 협조하신 분들 모두의 비밀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고충상담 시 원칙
✕

- 고충상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고충상담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작성 시, 사실에 근거해 기재해 주기 바랍니다.
- 고충상담이 아닌 부정행위 등의 제보는 별도의 「제보시스템」을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3.7. 제보 채널

- 1) 제보는 준법지원인 혹은 Compliance 담당자에게 전화,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인트라넷 내 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가능함
 ※ 2.3. 부패 조사 시스템, 1) 참고
- 2)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센터(제보채널)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익명으로 신고 가능함

#1) 홈페이지 – 윤리/준법 – 신고센터

윤리/준법	상생경영	환경경영	인권/근로자	사회공헌	품질 경영
윤리경영철학	규정	활동	신고센터		



정당한 제보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는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했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보하기

제보 확인

윤리/준법	상생경영	환경경영	인권/근로자	사회공헌	품질 경영
윤리경영철학	규정	활동	신고센터		

제보(신고) 내역 작성

익명여부	☐ 실명 ☒ 익명				
이름					
회신방법(택1)	☒ 이메일 ☐ 전화 ☐ 홈페이지확인 ☐ 회신불필요 @ 직접입력				
제목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 (0/4,000 Byte)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첨부파일	 Drag and drop a file here or click				
보안문자	336784 음성듣기 새로고침 ↺ 보안문자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방법

LIG덕스원의 신고센터는 제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 정보 항목: 성명, 이메일,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제보 접수 확인 및 신고포상 등 업무처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은 필요 시 제보 내용 추가 확인, 접수 확인 안내, 신고포상 등 업무처리를 위함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신고센터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보 건에 대한 종결처리가 완료된 후 1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신고포상 해당 건 등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업무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등록

돌아가기

- 3) 회사는 고충상담창구(상담채널)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익명으로 상담 가능함

#1) 협력업체구매포탈

#2) 협력업체구매포탈 - 고충상담창구

- 4) 회사의 모든 임직원, 운영국가의 제 3 자는 한국어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회사는 1)과 2)에서 언급한 신고센터와 고충상담창구를 한국어와 영어로 운영함

#1) 홈페이지 - 윤리/준법 - 신고센터

Ethics & Compliance Win-Win Partnership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Ethics Philosophy Regulations Ethical Practice **Report Center** >

We will protect an information source

- We will neither expose the identity of reporter nor disclose any information that may imply it.
- A reporter will not be subject to any disadvantage or discrimination from reporting.

We will keep secrecy for any information.

- A party that cooperates with reporting including giving statement, material submission, etc. will be also protected on a same level as the reporter. We will not disclose the identity of and the information from a reporter without his or her agreement.

Voluntary report may waive disciplinary sanctions.

- Voluntary reporting on noncompliance or illegality may waive a disciplinary sanction despite his/her participation.

Reporting **Viewing Reports**

Ethics & Compliance Win-Win Partnership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Ethics Philosophy Regulations Ethical Practice **Report Center** >

Report Form

Reporter ☐ Name ☒ Anonymity

Name

How to get a Reply(option) ☒ E-mail ☐ Telephone ☐ View on Home Page ☐ No Reply needed

@

Subject

Content (0/4,000 Byte)

Attached File (option)

Captcha

Note 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tems and Method for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port Filing Center collects personal information to the minimal extent necessary to handle a report properly.

- Items for Information Collection: Name, E-mail address, Cellular Phone No.

If a reporter doesn't want to disclose his or her identity, he or she can choose 'anonymous' in the name column. However, in case of a 'anonymous' report, a part of handling including filing confirmation, reward for report, etc. may be limited.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 Use

The collection and use of information is to communicate for additional inquiries when necessary, and reply for report filing, reward for reporting, etc. in our handling process.

Handling and Retention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e Report Filing Center system will be retained for one year, in principle, after the process of concerned report is completed; however, it may be exceptional when necessary to retain longer for cases such as a rewarded case, etc.

☒ Agree ☐ Disagree

☒ You may disagree with the above. However, please note that 'Disagree' may limit our work process.

☒ For further details, please refer to our Personal Information Policy on our home page.

Register **Previous Page**

#2) 협력업체구매포탈 - 고충상담창구



We will carefully listen to the voices from business partners.

· Acknowledging our business partners are the source of our competitiveness, we will help them in good faith.



We will keep confidentiality of any help request from business partners.

· We will keep the confidentiality of any business partner who requests help, and other supporters.



We will operate a fast process for high reliability.

· Upon a help request, we will analyze the status, and give a quick feedback including a measure for improvement, etc.

[Help Request](#)
[Help Request Details](#)

Help Request Form

Reporter	☐ Name ☒ Anonymity
Company (Name)	
How to get a Reply(option)	☒ E-mail ☐ Telephone ☐ View on Home Page ☐ No Reply needed
	@
Request Type	☒ Unfair request for clauses in contracts ☐ Unfair request for disclosure of technical data ☐ Unfair business intervention ☐ Unfair pricing ☐ Unfair discount ☐ Others
Subject	
Content (0/4,000 Byte)	
Attached File (option)	 Drag and drop a file here or click
Captcha	 Refresh

Note 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tems and Method for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port Filing Center collects personal information to the minimal extent necessary to handle a report properly.

- Items for Information Collection: Name, E-mail address, Cellular Phone No.

If a reporter doesn't want to disclose his or her identity, he or she can choose 'anonymous' in the name column.

However, in case of a 'anonymous' report, a part of handling including filing confirmation, reward for report, etc. may be limited.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 Use

The collection and use of information is to communicate for additional inquiries when necessary, and reply for report filing, reward for reporting, etc. in our handling process.

Handling and Retention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e Report Filing Center system will be retained for one year, in principle, after the process of concerned report is completed; however, it may be exceptional when necessary to retain longer for cases such as a rewarded case, etc.

☒ Agree ☐ Disagree

※ You may disagree with the above. However, please note that 'Disagree' may limit our work process.

※ For further details, please refer to our Personal Information Policy on our home page.

[Register](#)
[Previous Page](#)

4. 이해상충

4.1. 이해상충 방지 규정

1) 회사는 회사와의 이해상충을 금지함

#1) 윤리규범 제4장 제5조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LIG넥스원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5. 회사와의 이해상충 금지
(1)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금지한다.

#2)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4장 제5조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5. 회사와의 이해상충 금지
(1)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전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직무 등을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사업을 영위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3)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별첨4. 이해관계 신고서).

#3)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4조의2

제 4 조 의 2 이해상충 등
① 회사의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거래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1. 회사의 임직원이 거래상대방(법인인 경우 대표, 직무담당자)과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2. 회사의 임직원,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이 방산, 공공조달과 관련한 정부,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
3. 회사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거래상대방 및 이와 관련된 업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거래상대방 및 이와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 주주, 파트너, 컨설턴트, 대표, 대리인, 사외이사등이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경우
5. 회사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회사 임직원 또는 회사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또는 그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 2) 이해상충 적용범위는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국내외 법인, LIG 넥스원과 거래하는 독립된 제 3 자(투자회사, 협력회사, 컨설턴트, 대리인, 중개인 등), 그리고 소속 임직원(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모든 이사회 구성원 포함)이며, LIG 넥스원의 윤리규범 및 회사의 윤리경영과 관련한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1)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1조

1. 적용대상

- (1) LIG넥스원 주식회사와 LIG넥스원 주식회사가 투자한 법인 중 LIG넥스원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이하 통칭하여 '회사'라 함)의 임직원(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모든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윤리규범 및 회사의 윤리경영과 관련한 규정 및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2) LIG넥스원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해외법인의 경우 현지 법규를 함께 고려하여 시행한다.
- (3) LIG넥스원과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투자회사, 협력회사, 판매 대리점, 컨설턴트, 대리인, 중개인 등)라 하더라도 LIG넥스원과 업무를 수행하거나 LIG넥스원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윤리규범 및 이와 관련한 규정 및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2조

제 2 조 적용범위

본 부패방지규정은 회사, 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국내외 법인 및 그 소속의 모든 임직원(사외이사, 기타비상무 이사 등 모든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

- 3) 회사 임직원 개인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의거하여 이해관계 신고서를 작성하고 법무 Compliance 팀에 신고하여야 함
- ① 회사의 임직원이 거래상대방(법인인 경우 대표, 직무담당자)과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 ② 회사의 임직원, 그 가족(「민법」 제 779 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이 방산, 공공조달과 관련한 정부,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

- ③ 회사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거래상대방 및 이와 관련된 업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 ④ 회사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거래상대방 및 이와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 주주, 파트너, 컨설턴트, 대표, 대리인, 사외이사 등이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경우
- ⑤ 회사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회사 임직원 또는 회사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또는 그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이해충돌방지법” 제 9 조 제 1 항에 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1) 윤리규범 실천지침 별첨4 이해관계 신고서

별첨 4

이해관계 신고서

- 회사의 임직원이 아래 열거한 바와 같이 개인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윤리규범실천지침 제4장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해관계 신고서를 작성하고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4조의2

제 4 조의 2 이해상충 등

- ① 회사의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거래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1. 회사의 임직원이 거래상대방(법인인 경우 대표, 직무담당자)과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2. 회사의 임직원,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이 방산, 공공조달과 관련한 정부,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
 3. 회사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거래상대방 및 이와 관련된 업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거래상대방 및 이와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 주주, 파트너, 컨설턴트, 대표, 대리인, 사외이사등이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경우
 5. 회사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회사 임직원 또는 회사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또는 그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4.2. 이해상충 관리 절차

- 1) 회사는 이해상충 상황을 관리하는 절차를 갖추
- 2) 회사의 임직원은 인트라넷, 서면 등을 통해 법무 Compliance 팀에 이해관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1) 인트라넷 - 컴플라이언스 - 이해관계 신고서

#2) 윤리규범 실천지침 별첨4 이해관계 신고서

1. 신고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사 번		성 명	

2. 신고내용	
구 분	내 용
이해상충 구분	
이해상충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소속/직급 : 신고자와의 관계 :

3. 직무수행 범위	
구 분	내 용
직무유형	
거래규모	

신고일자 :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담당임원 : (인)

- 3) 이해관계 신고서는 내부 시스템에 전산으로 기록함

#1) 인트라넷 - 컴플라이언스 - 이해관계 신고서 목록

- 4) 법무 Compliance 팀은 이해상충의 정도,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회신하고, 임직원은 해당 의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1) 윤리규범 실천지침 별첨4 이해관계 신고서

#2)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4조의 2

- 5) 회사는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음

#1)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4조 제2항

#2)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12조

제 12 조 처벌

- ① 회사는 부패방지법령 및 부패방지규정을 포함한 회사의 내규, 지침 등을 위반한 임직원 등에 대해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하며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② 임직원 등의 부패방지법령 및 부패방지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임직원 등 개인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임직원은 본인에게 부과된 해당 벌금액 기타 손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다.

#3) 징계심의지침

징계사유		기준
1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의 법규 및 회사의 사규를 위반한 경우 (1) 윤리규범 및 실전지침을 위반한 경우: 별첨[1] 참조 (2) 부패방지법령 및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별첨[2] 참조	1-5

4.3. 공공부문 출신 직원 고용 정책

- 1) 한국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하여 정치인, 전현직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3 년)의 취업을 제한함

#1) 공직자윤리법 제4장 제17조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044-201-8452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19. 12. 3.>

- 2) 또한 한국은 한국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취업 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음

#1) 방위사업법 제59조의2



방위사업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65호, 2020. 3. 31.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02-2079-6414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장비과-방산업체 지정) 044-203-4319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방산일자리과-방산육성제도) 02-2079-6418, 6476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절충교역) 02-2079-6353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품질보증, 품질경영체제 인증) 02-2079-6844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기술표) 02-2079-6384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조달기획과-계약의 특례) 02-2079-6968, 6927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수출허가) 02-2079-6827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군수품무역대리업) 02-2079-6918

제59조의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적용받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 3) 회사는 1)과 2)를 준수함

#1) 홈페이지 - 윤리/준법 - 대표이사 실천 선언문

06

회사는 전직 혹은 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한국의 법(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4.4. 정치인 고용 정책

- 1)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치인과 어떤 거래도 맺지 않음을 명시

#1) 홈페이지 - 윤리/준법 - 대표이사 실천 선언문

07

또한 회사는 정치인과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 2) 국회법에 따라 한국은 정치인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음

#1) 국회법 제29조의2



국회법

[시행 2022. 4. 5.] [법률 제18719호, 2022. 1. 4., 타법개정]

국회사무처 (의사과) 02-788-2903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5. 고객 연계

5.1. 후원, 기부, 스폰서십

5.1.1. 정치적 기부 – N/A

1) 회사는 정치적 기부를 하지 않음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4조 4항

④ 회사의 명의 및 자원을 활용한 정치후원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임직원이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회사와 무관하게 사인의 지위에서 제공
하는 적법한 수준의 정치후원 행위는 허용될 수 있다.

#2) 홈페이지 – 윤리/준법 – 대표이사 실천 선언문

07
**또한 회사는 정치인과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5.1.2. 정치적 기부 공개 – N/A

1) 회사는 정치적 기부를 하지 않고 있음

5.1.3. 자선단체 기부

1)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 4 조 2 항를 통하여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부패방지 규정 "별첨 1 금품
등 제공 가이드라인" 에 부합하거나, 부패방지 조직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함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4조 2항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공무원, 업무
관련자, 기존 또는 향후의 모든 거래 상대방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별첨 1에서 규정한 '금품 등 제공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거나, 부패방지 조직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2)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별첨 1.3 금품 유형별 세부원칙

금품유형	상세기준	승인 필요여부
위문금품	-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 및 승인을 얻었을 것 - 대상자에게 부정한 사업상 혜택을 얻기 위해서, 또는 부정한 사업상 혜택에 따른 대가 성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
기부 및 후원활동	-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후원비 제공 및 지원행위를 하였을 것 - 대상자에게 부정한 사업상 혜택을 얻기 위해서, 또는 부정한 사업상 혜택에 따른 대가 성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

- 2) 회사는 업무재량권 규정에 기부금 지출 시 재량권자의 품의를 받도록 규정함

경비기준								
• 경비지출(건당)							재량권자	
경비지출 (건당)	3. 경비 D	기부금	이상/건	이상/건	대표이사	경영기획실장		
			미만/건	미만/건	부부장	경영기획실장		
		기타	이상/건		대표이사	경영관리본부장		
			미만/건		부부장	경영관리본부장		

* 기타 항목 중 분야별재량권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분야별 재량권에 따름

- 3) 회사는 기부금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용하여 기부 및 후원에 대한 철저히 관리 감독함

#1) 기부금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LIG 넥스원(주)		NEX1(20) – F - 0106	
제정일자 : 2020.01.01	기부금 심의 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번호 :	
개정일자 : -		페이지 : 1 / 8	
제 1 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본 기준은 당사의 "업무재량권 규정_ 경비D 기부금"을 표준으로, 당사에서 집행하는 기부금의 후원처 및 후원금액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금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부금 심의위원회 의결서('21.7.1 XX사단 기부)

기부금 심의위원회 의결서	
1. 안건번호 :	2021- [REDACTED]
2. 안건 명 :	[REDACTED] 기부금 지원의 件
3. 회의개요 :	서면 대체
4. 심의요지:	[REDACTED]
	○ [REDACTED]

5.2. 로비 – N/A

- 1) 국내법은 로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또한 이를 준수하여 로비활동을 하지 않음

5.3. 선물 및 편의 제공

- 1) 회사는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및 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선물 및 편의를 제공함
- 2) 특히 회사는 선물 및 편의와 관련하여 현지/한국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함
- 3) 회사는 선물과 편의 등의 비용은 회계에 정확히 기록하여 전산으로 보관함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4조 2항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공무원, 업무 관련자, 기존 또는 향후의 모든 거래 상대방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별첨 1에서 규정한 '금품 등 제공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거나, 부패방지 조직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2) 업무재량권규칙 - 경비

경비기준									
• 경비지출(건당)							재량권자		
경비지출 (건당)	3. 경비 D	기부금	_____	_____ 이상/건	_____	_____ 이상/건	대표이사	경영기획실장	
			/_____	_____ 미만/건		_____ 미만/건	부문장	경영기획실장	
		_____					대표이사	경영관리본부장	
		기타	_____ 이상/건				대표이사	경영관리본부장	
_____ 미만/건					부문장	경영관리본부장			

※ 기타 항목 중 분야별재량권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분야별 재량권에 따름

6. 공급망 관리

6.1. 공급망 구축 시 구매부서 감독

- 1)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 7 조에 의거하여 회사와의 신규 거래처 및 기존업체 갱신 계약시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규정함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7조

제 7 조 [제3자의 선정 및 실사]

- ①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를 선정하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 하거나 해당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기초정보를 확인 하여 부패위험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제3자에 대한 기초정보의 확인은 별첨 2에서 규정한 '제3자 실사질의서' 의 양식에 따른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상기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제3자의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자체평가는 별첨 3에서 규정한 '제3자 체크리스트' 의 양식에 따른다.

- 2) 구매부서는 모든 협력회사를 선정, 관리하는 권한을 가짐
- 3) 구매부서는 모든 협력회사를 선정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 부패방지 관련 실사를 수행함
- 4) 또한 구매부서는 3 년에 1 번 거래선 역량평가를 수행하는 때에 부패방지 관련 항목을 추가로 평가를 실시함

#1) 실사 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국문)

■ 평가 점수 기준					
평가 점수	5점 (매우우수)	4점 (우수)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 (미실시)
항목별 평가점수 정의	요구항목의 표준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으며 실제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	요구항목의 표준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으며 실제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나 일부 개선이 요구됨	요구항목의 표준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으며 실제 이행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나 전반적 개선이 요구됨.	요구항목의 표준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으나 미 이행됨.	요구항목의 표준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평가결과					
요구항목 제목 (Level 1)	평가점수 (1차: 협력업체작성, 2차: LIG백스원작성)	세부 요구사항요구내용	평가근거(협력업체 담당자 작성) *구체적, 서술식 작성작성, 관련근거 정확하게	미흡사항/개선요구사항 (LIG백스원 심사사원 작성)	비고
3. 회사 윤리	5	1. 윤리경영 위배내용이 없어야 한다. (원가부정, 성적서 위변조, 계약 미이행, 공정거래법 위반 등) ○ 5점 : 없음 ○ 4점 : 1개 위반 ○ 3점 : 2개 위반 ○ 2점 : 3개 위반 ○ 1점 : 4개 이상 위반			

6.2. 신규 협력사 부패방지 실사

- 1)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 7 조에 회사와의 신규 거래처 및 기존업체 갱신 계약시 실사를 규정함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7조

제 7 조 [제3자의 선정 및 실사]

①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를 선정하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기초정보를 확인 하여 부패위험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제3자에 대한 기초정보의 확인은 별첨 2에서 규정한 '제3자 실사질의서' 의 양식에 따른다.

- 2) 회사는 모든 제 3 자(협력사 포함) 선정, 재선정 및 비즈니스 상 관계에 변화가 있을 때 실사를 실시함
- 3)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 7 조 3 항에 근거하여 구매부서는 제 3 자 선정 관련 실사를 수행하여 법무 Compliance 팀에 자체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으며, 법무 Compliance 팀은 해당 평가결과를 재검토하여 제 3 자의 부패위험의 등급 분류 및 해당 업체의 선정, 재선정, 계약해지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1)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7조 3항

③ 회사의 임직원은 제3자 선정과 관련하여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제3자의 기초정보 및 자체평가결과를 부패방지조직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패방지조직은 해당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제3자의 부패위험의 등급 분류 및 필요한 경우 선정 부적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해당 의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3. 협력사 부패방지 요구

- 1)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에 급행료와 선물/접대 등을 포괄한 모든 경제적 이익의 제공, 약속, 및 제의를 금지함
- 2) 회사는 협력사에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협력사 간담회 시 적절한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

#1) 협력사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서

LIG Nex1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서



와 LIG넥스원주식회사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본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가알에프(주)

1. 귀사와의 거래에서 기본 법규준수는 물론 어떠한 불공정 거래, 부정·비리행위 및 품질 증빙 자료(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하며,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3.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귀사의 임직원에게 향응·접대 및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귀사의 임직원이 계약상 요구되는 것 이외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귀사와의 거래에서 귀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를 제의 받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귀사의 법무/Compliance팀으로 제보하겠습니다.
6.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 여부에 대한 귀사의 조사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 조사 목적의 서류)의 제출 등 모든 협조를 하겠습니다.
7.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한 LIG넥스원 협력업체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 귀사와의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약하기

* 서약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서약이 완료됩니다.

#2) 협력사 간담회



#3) 협력사 대상 CEO 윤리·준법경영 서신

LIG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

존경하는 대표님,

임인년 새해를 맞아 대표님과 임직원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새해 소망하는 바가 모두 이루지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당사에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윤리규범과 그 실천지침을 통해 당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으며, "회사의 전 임직원은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다른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임직원은 협력사로부터 일체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협력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 임직원에게 선물, 금품, 향응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와 업무 진행에 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경우가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와 같이 정성 어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훈훈한 명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당사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의 요구를 받으셨거나 불합리한 거래 또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당사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시에는 제보에 대한 비밀보장은 물론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당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의지에 대해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가족, 친지와 따뜻한 정을 나누시는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24
LIG넥스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지 찬 드림

6.4. 2 차 협력사에 대한 부패방지 프로그램 적용

- 1) 회사는 협력사와 계약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체결함
- 2) 청렴계약특수조건에 부패방지조항을 삽입하여 회사는 협력사 및 하위 공급업체에도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준수토록 요구함

#1)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제 1 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UG보스틸㈜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알루미늄·용역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발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알루미늄·용역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방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음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입찰 중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UG보스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 (1) 경정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입찰을 주도한 자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 경정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입찰 중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국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거나 실제 이익을 제거하지 않는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음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UG보스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음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감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관의를 받아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 입찰 및 계약조건에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감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음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음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UG보스틸㈜의 처분을 받은 자는 UG보스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익을 제거하지 않는다.

제 4 조 (계약폐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2) 협력사 실사질의서

당사 (제3자명) _____은 LIG넥스원 주식회사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LIG넥스원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또는 개인으로서, LIG넥스원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부패방지활동 상 통제 및 관리의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당사와 관련한 다음의 사실에 대해 확인합니다.

회사 소유권 및 경영*	정부공무원이 당사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 YES ☐ NO
	당사의 임직원 중 정부기관의 직무 및 직위를 보유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 YES ☐ NO
	- 해당 직원의 직위 및 성명	
	당사의 임직원 중 정당, 정치기관의 직무 및 직위를 보유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 YES ☐ NO
	- 해당 직원의 직위 및 성명	
준법	당사는 내부/외부 감사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YES ☐ NO
	당사는 부패방지 정책, 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YES ☐ NO
	당사는 지난 5년간 부패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형사고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	☐ YES ☐ NO
	당사 및 당사의 피송계인, 현재 또는 전 소유주, 임직원, 주요 주주가 최근 5년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 YES ☐ NO
	i) 사업수행 정지	
	ii) 형사고소	
	iii) 사기 또는 뇌물수수 혐의대상 iv) 윤리 또는 법적 문제로 계약해지	
대리인 활용여부*	당사의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부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대리인을 활용합니다. *	☐ YES ☐ NO
	- 대리인 이름/연락처	
	- 대리인 업무범위	
	- 해당 대리인이 정부공무원입니다.	☐ YES ☐ NO
	- 정부공무원이 해당 대리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YES ☐ NO

(*) 필수항목임.

#3) 협력사 부패방지조항

Korean

제00조 법률준수

(계약상대방)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하며 서약한다.

- (1) (계약상대방)의 재산, 경력, 활동 및 자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이 [회사]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모든 중요한 점에서 완전하고 진실되며, 부정확하거나 허위가 아니다.
- (2) (계약상대방)은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사기, 부패, 조세포탈, 절도, 증권범죄, 또는 계약위반을 포함하는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인정된 사실이 없다.
- (3) (계약상대방)의 본 계약이행은 (계약상대방) 또는 (계약상대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및 규제에 부합된다.

제00조 부패방지

- (1)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임직원이 현재 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어느 시점이라도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결정권을 갖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 ①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소속인원 및 정부의 공식 대리인
 - ②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직원
 - ③ 공공 국제단체의 임직원
 - ④ 정치인, 정당 직원 및 공직 후보자
 - ⑤ 공무를 수탁받은 자
- (2)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조 제1항 각 호의 자를 비롯하여 기존 또는 향후 거래상대방 등에게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의 지급을 제의하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 (3) (계약상대방)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국내의 부패방지법령(이하 '부패방지법령') 및 [회사]의 부패방지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 (4)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의 효력기간 내는 물론,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간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회계장부 및 기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세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계약상대방)의 [회사]의 부패방지규정 및 부패방지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회계장부 및 기록 등을 조사 또는 복사할 수 있다.
- (6)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알게 되거나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 (7) (계약상대방)이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회사]는 해당 위반여부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금지급 의무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 (8)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방)이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본 조 제5항에 따른 [회사]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회계장부, 기록 등의 조사 또는 복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 ③ 기타 본 조를 위반한 경우
- (9) (계약상대방)의 본 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벌금, 손해배상 등 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5. 협력사 부패 조사 및 공개

- 1) 회사는 협력사와 관련된 비윤리적, 부패 또는 뇌물 관련 사건 없음

7. 회사의 대리인 및 합작투자

7.1. 대리인

7.1.1. 대리인 고용 정책

- 1)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를 통하여 대리인
사용에 대해 규정함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6조

제 3 장 제3자의 선정 및 관리

제 6 조 [임직원의 의무사항]

- ① 회사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선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 제3자에게도 부패방지규정을 고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본 부패방지규정의 '제3자'란 회사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회사 (Supplier) 및 컨설턴트(Consultant), 회사를 대리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업 대리인(Agent), 회사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절충교역(Offset) 파트너, 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합작투자(Joint Venture) 파트너 및 컨소시엄 파트너 등 대리인(Agent), 회사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절충교역(Offset) 파트너, 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합작투자(Joint Venture) 파트너 및 컨소시엄 파트너 등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를 위하여 또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을 의미한다.

#2)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7조

제 7 조 [제3자의 선정 및 실사]

- ①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를 선정하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 하거나 해당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기초정보를 확인 하여 부패위험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제3자에 대한 기초정보의 확인은 별첨 2에서 규정한 '제3자 실사질의서'의 양식에 따른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상기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제3자의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자체평가는 별첨 3에서 규정한 '제3자 체크리스트'의 양식에 따른다.

#3)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8조

제 8 조 [제3자와의 계약체결 및 관리]

- ① 회사의 임직원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의 유형 및 부패 방지조직의 검토의견상 해당 제3자의 부패위험 등급에 따라 계약서에 부패 방지와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 ② 제3자의 유형 및 부패위험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부패방지 조항은 별첨 4에서 규정한 '표준 부패방지조항'에 따른다.

#4)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_21.06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1. 제목	LIG넥스원(주) 2021년 상반기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2. 주요내용	2021년 상반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동 실적 - 자율준수 활동 조직 구성 ·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 선정 - 전사 대상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한 팀단위 조직별 위험등급 지정 - 자율준수 서면 점검 진행 - 윤리/준법 집합 교육 · 임원,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 신입/경력직원 등 ○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운영 - 해외 Agent 선정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및 조치 ○ 기타 자율준수 활동 -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인 -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 Compliance News 게재
3. 결정일자	2021-06-28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상기 3항의 결정일자는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관련공시 -

7.1.2. 대리인 고용 시 부패방지 실사

-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에 의거하여 대리인에 대한 실사를 실시함
- 법무 Compliance 팀은 3 자 실사를 통해 고위험 대리인을 구분하고 있으며 실사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관리함

#1) 회사 준법경영가이드 p.22

4) 고위험시장 사업 수행과 관련한 준수사항(위험신호)

- "위험 신호"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실, 사건 또는 일련의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패 및 뇌물과 관련한 위험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 Compliance 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등 관련 지표가 낮거나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사업적 평판이 좋지 않은 경우
 - 거래 상대방이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공식적 혹은 비공식 조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혹은 벌금, 과태료 등을 포함한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형사 집행 조치 또는 민사 소송을 당한 경우
 -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다른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공무원과 가족관계 혹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실사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혹은 실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한 질의서와 불일치 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의 신원이나 거래 상대방이 속한 회사의 실소유자의 신원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FCPA, UKBA, 또는 기타 유사한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업무와 비교하여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익명의 타인과 이익을 나누도록 요청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서면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다른 우려사항이 발생한 경우

7.1.3. 대리인 실소유자 확인

- 1)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 7 조에 의거 제 3 자 실사 시 회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함
- 2) 제 3 자 실사질의서는 공무원과의 관련 여부, 실소유자, 조직구성원 등을 포함하며, 법무 Compliance 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여 실사에 활용함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7조

제 7 조 [제3자의 선정 및 실사]

- ①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를 선정하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기초정보를 확인 하여 부패위험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제3자에 대한 기초정보의 확인은 별첨 2에서 규정한 '제3자 실사질의서'의 양식에 따른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상기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제3자의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자체평가는 별첨 3에서 규정한 '제3자 체크리스트'의 양식에 따른다.

7.1.4. 대리인 계약, 부패방지조항

- 1)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별첨 4.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과의 계약서에 부패방지조항을 삽입함
- 2) 또한 회사는 해당 규정에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계장부 및 기록 등을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함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표준 부패방지조항

[별첨 4]

표준 부패방지조항

- 회사의 임직원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에 열거된 제3자의 유형 및 제3자의 부패위험에 대한 부패방지조직의 검토의견에 따라 계약서에 부패방지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 가) 유형 1의 제3자
 - 회사에 물품, 용역 등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거래관계에 있어 계약상대방
 - * 영업대리인(Agent), 컨설턴트(Consultant), 협력회사(Supplier)를 포함
 - 나) 유형 2의 제3자
 -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와 합작 투자하거나,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의 거래관계에 있어 계약상대방 또는 다른 계약당사자
 - * 합작투자(Joint Venture) 파트너, 컨소시엄(Consortium) 파트너를 포함
- 회사가 제시하는 표준 부패방지조항에 대해 제3자의 검토의견에 따라 부패방지조항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의 임직원은 계약체결 전 부패방지 조직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Korean

제00조 법률준수

(계약상대방)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하며 서약한다.

- (1) (계약상대방)의 재산, 경력, 활동 및 자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이 [회사]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모든 중요한 점에서 완전하고 진실되며, 부정확하거나 허위가 아니다.
- (2) (계약상대방)은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사기, 부패, 조세포탈, 절도, 증권범죄, 또는 계약위반을 포함하는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인정된 사실이 없다.
- (3) (계약상대방)의 본 계약이행은 (계약상대방) 또는 (계약상대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및 규제에 부합된다.

제00조 부패방지

- (1)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임직원이 현재 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어느 시점이라도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결정권을 갖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 ①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소속인원 및 정부의 공식 대리인
 - ②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직원
 - ③ 공공 국제단체의 임직원
 - ④ 정치인, 정당 직원 및 공직 후보자
 - ⑤ 공무를 수탁받은 자
- (2)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조 제1항 각 호의 자를 비롯하여 기존 또는 향후 거래상대방 등에게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의 지급을 제의하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3) (계약상대방)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이하 '부패방지법령') 및 [회사]의 부패방지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 (4)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의 효력기간 내는 물론,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간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회계장부 및 기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세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계약상대방)의 [회사]의 부패방지규정 및 부패방지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회계장부 및 기록 등을 조사 또는 복사할 수 있다.
- (6)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알게 되거나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 (7) (계약상대방)이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회사]는 해당 위반여부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금지급 의무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 (8)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방)이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본 조 제5항에 따른 [회사]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회계장부, 기록 등의 조사 또는 복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 ③ 기타 본 조를 위반한 경우
- (9) (계약상대방)의 본 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벌금, 손해배상 등 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상기 조항은 LIG Nex1의 계약상대방에게 의무를 부여하며, 계약서 상 용어변경 필요 시, [회사]는 LIG Nex1을, (계약상대방)은 LIG Nex1의 계약상대방을 의미하도록 변경 가능

7.1.5. 대리인 인센티브

- 1) 회사는 대리인의 인센티브를 사업의 난이도와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불함
- 2)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비율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대리인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함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별첨 2. 제3자 실사질의서

제3자 실사질의서

당사 (제3자명) 은 LIG넥스원 주식회사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LIG넥스원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또는 개인으로서, LIG넥스원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부패방지활동 상 통제 및 관리의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당사와 관련한 다음의 사실에 대해 확인합니다.

제3자 정보	회사명*		
	국적*		
	업종* (보유자격 및 면허)		
	주소*		
	전화*/팩스*		
	홈페이지 /담당자 이메일		
회사이력*	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 (Tax Code)		
	사업수행 국가		
은행정보	주거래 은행 명칭/주소/연락처*		
	본 사업의 지급관련 은행계좌*		
회사 소유권 및 경영*	정부공무원이 당사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 YES ☐ NO	
	당사의 임직원 중 정부기관의 직무 및 직위를 보유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 YES ☐ NO	
	- 해당 직원의 직위 및 성명		
	당사의 임직원 중 정당, 정치기관의 직무 및 직위를 보유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 YES ☐ NO	
	- 해당 직원의 직위 및 성명		
준법	당사는 내부/외부 감사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YES ☐ NO	
	당사는 부패방지 정책, 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YES ☐ NO	
	당사는 지난 5년간 부패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형사고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	☐ YES ☐ NO	

#2)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별첨 3. 제3자 체크리스트

제3자 체크리스트

제3자명 (거래대상자명)	
총점 (체크리스트 작성결과)	

※ 별첨2 양식에 따라 제3자에게 요청하여 확인한 실사정보 및 실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주시시오. 그 다음, YES를 선택한 항목들의 경우 맨 오른쪽 칸에 기재된 점수를 전부 합하여 총점을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가 수행될 국가의 부패 인식지수(CPI)가 몇 점입니까?			
	- 70점 이상	YES ☐	NO ☐	1점
	- 50점 이상 70점 미만	YES ☐	NO ☐	2점
	- 50점 미만	YES ☐	NO ☐	3점
2	제3자와 최초 거래입니까?	YES ☐	NO ☐	1점
3	'제3자 실사 질의서'에 대하여 제3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정보가 19개 문항 중 몇 개정도입니까?			
	- 1개 이상 5개 미만	YES ☐	NO ☐	1점
	- 5개 이상 10개 미만	YES ☐	NO ☐	2점
	- 10개 이상	YES ☐	NO ☐	3점
4	공무원, 발주처 등으로부터 해당 제3자를 사용하도록 요청을 받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YES ☐	NO ☐	2점
5	제3자가 부패방지법령 및 당사에서 제시한 부패방지 규정의 준수를 꺼려합니까?	YES ☐	NO ☐	3점
6	제3자가 본건 업무수행과 관련한 실적, 필요 면허 및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습니까?	YES ☐	NO ☐	2점
7	제3자가 관련 지식, 업무성과, 임직원의 전문성보다 정부 인맥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친분 또는 영향력을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습니까?	YES ☐	NO ☐	2점
8	제3자가 뇌물 지급, 뇌물 수수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에 관한 수사, 기소 등의 전력이 있거나 이러한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YES ☐	NO ☐	3점
9	제3자가 서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YES ☐	NO ☐	3점

7.1.6. 대리인 정보

- 1) 회사의 대리인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공개가 불가함

7.1.7. 대리인 제재

- 1) 회사의 대리인에 대한 제재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공개가 불가함

7.2. 합작회사

7.2.1. 합작회사 부패방지 실사

- 1)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에 모든 JV 를 포함한 모든 제 3 자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실사를 할 것을 규정함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7조

제 7 조 제3자의 선정 및 실사

- ①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를 선정하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기초정보를 확인하여 부패위험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제3자에 대한 기초정보의 확인은 별첨 2에서 규정한 '제3자 실사질의서'의 양식에 따른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상기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제3자의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자체평가는 별첨 3에서 규정한 '제3자 체크리스트'의 양식에 따른다.
- ③ 회사의 임직원은 제3자 선정과 관련하여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제3자의 기초정보 및 자체평가결과를 부패방지조직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패방지조직은 해당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제3자의 부패위험의 등급 분류 및 필요한 경우 선정 부적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해당 의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2.2. 합작회사 부패방지 계약

- 1)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별첨 4.에 의거하여 JV 를 포함한 모든 제 3 자에 대해 부패방지를 위한 실사를 할 것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음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별첨 4. 표준 부패방지조항

Korean

제00조 법률준수

(계약상대방)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하며 서약한다:

- (1) (계약상대방)의 재산, 경력, 활동 및 자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이 [회사]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모든 중요한 점에서 완전하고 진실되며, 부정확하거나 허위가 아니다.
- (2) (계약상대방)은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사기, 부패, 조세포탈, 절도, 증권범죄, 또는 계약위반을 포함하는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인정된 사실이 없다.
- (3) (계약상대방)의 본 계약이행은 (계약상대방) 또는 (계약상대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및 규제에 부합된다.

제00조 부패방지

- (1)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임직원이 현재 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어느 시점이라도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결정권을 갖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 ①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소속인원 및 정부의 공식 대리인
 - ②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직원
 - ③ 공공 국제단체의 임직원
 - ④ 정치인, 정당 직원 및 공직 후보자
 - ⑤ 공무를 수탁받은 자
- (2)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조 제1항 각 호의 자를 비롯하여 기존 또는 향후 거래상대방 등에게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의 지급을 제의하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3) (계약상대방)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이하 '부패방지법령') 및 [회사]의 부패방지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 (4)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의 효력기간 내는 물론,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간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회계장부 및 기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세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계약상대방)의 [회사]의 부패방지규정 및 부패방지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회계장부 및 기록 등을 조사 또는 복사할 수 있다.
- (6)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알게 되거나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 (7) (계약상대방)이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회사]는 해당 위반여부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금지급 의무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 (8)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방)이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본 조 제5항에 따른 [회사]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회계장부, 기록 등의 조사 또는 복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 ③ 기타 본 조를 위반한 경우
- (9) (계약상대방)의 본 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벌금, 손해배상 등 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상기 조항은 LIG Nex1의 계약상대방에게 의무를 부여하며, 계약서 상 용어변경 필요 시, [회사]는 LIG Nex1을, (계약상대방)은 LIG Nex1의 계약상대방을 의미하도록 변경 가능

7.2.3. 합작회사 부패방지 보장 – 합작회사 직원 부패방지 교육 등

- 1) 회사는 홈페이지에 JV 를 포함한 모든 제 3 자의 부패방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명시함

#1) 홈페이지 – 윤리/준법 - 대표이사 실천 선언문

05

회사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와 관련 있고, 당사의 일을 맡아 하는 모든 제3자(에이전트, 협력업체, 중개인, J/V 등)가 뇌물 및 부패방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절충교역 - N/A

- 1) 회사가 외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절충교역을 실시한 적은 없음

9. 고위험시장

9.1. 고위험 시장 위험관리절차

- 1) 회사 준법경영가이드에 의거 사업담당자가 사업 수행 시 고위험시장에 대한 부패위험을 인지한 경우 법무 Compliance 팀으로 즉시 연락해야 하며, 법무 Compliance 팀에서는 그 시장에 대한 부패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여 사업담당자가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1) 회사 준법경영가이드(부패방지) p.22

4) 고위험시장 사업 수행과 관련한 준수사항(위험신호)

- "위험 신호"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실, 사건 또는 일련의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패 및 뇌물과 관련한 위험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 Compliance 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등 관련 지표가 낮거나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사업적 평판이 좋지 않은 경우
 - 거래 상대방이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공식적 혹은 비공식 조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혹은 벌금, 과태료 등을 포함한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형사 집행 조치 또는 민사 소송을 당한 경우
 -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다른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공무원과 가족관계 혹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실사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혹은 실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한 질의서와 불일치 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의 신원이나 거래 상대방이 속한 회사의 실소유자의 신원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FCPA, UKBA, 또는 기타 유사한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업무와 비교하여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익명의 타인과 이익을 나누도록 요청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서면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다른 우려사항이 발생한 경우

9.2. 자회사 정보

1) 회사는 모든 관계회사, 합작사 정보를 공시함

#1) 공시자료 : XII. 상세표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 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엘아이지정 밀기술 주식회사	2000.10	대한민국 대전	정보통신기기 제조 · 판매 업	15,157	100% 지분보유	X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4	LIG넥스원(주)	215-86-35051
		인베니아(주)	124-81-80691
		(주)삼양옵틱스	608-86-00017
		(주)이노와이어리스	120-86-12537

#2) 공시자료 : 계열회사 현황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4	LIG넥스원(주)	215-86-35051
		인베니아(주)	124-81-80691
		(주)삼양옵틱스	608-86-00017
		(주)이노와이어리스	120-86-12537
비상장	35	(주)LIG	220-87-08456
		(주)휴세코	114-81-97424
		(주)LIG시스템	132-81-58074
		LIG풍산프로테크(주)	505-81-61549
		엘엔지옵트로닉스(주)	220-88-32249
		(주)서빅	214-88-07070
		(주)에카투어	211-87-15759
		(주)휴세코부동산중개	511-81-25742
		엘아이지정밀기술(주)	220-81-98505
		(주)케이제이렌탈	210-81-69852
		(주)화인	307-81-01438
		Accuver APAC Limited	해외법인
		Accuver Americas, Inc.	해외법인
		Accuver Co., Ltd.	해외법인
		Accuver EMEA Limited	해외법인
		Accuver EMEA op. 3 o.o.	해외법인

○ 공시자료 : 타법인출자 현황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영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치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치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백화산업개발조합(+) (비상장)	비상장	1999년 04월 01일	당순투자	700	103	9.9	20,220	-8	0	2,375	95	8.8	22,595	235,914	17,954
(주)포도산업 (비상장)	비상장	2020년 11월 24일	당순투자	5,000	145	4.2	5,000	13	1,500	4,465	158	3.6	10,965	28,425	-21,473
(주)씨루케이 (비상장)	비상장	2020년 06월 11일	당순투자	300	7	7.1	300	-	-	-	7	7.1	300	1,220	-178
(주)에이유 (비상장)	비상장	2021년 09월 05일	당순투자	500	-	-	-	2	500	-	2	1.7	500	1,635	-63
Dec초기기업스케일업펀드 (비상장)	비상장	2020년 07월 22일	당순투자	500	1	2.9	500	5	4,500	-	5	2.9	5,000	17,003	-236
스마트어셈블리그린뉴딜펀드 (비상장)	비상장	2021년 10월 21일	당순투자	500	-	-	-	5	500	-	5	5.2	500	-	-
슈미트-DEC 미래모빌리티펀 (비상장)	비상장	2021년 12월 23일	당순투자	600	-	-	-	5	600	-	5	3.8	600	-	-

9.3. 자회사 지배구조

1) 회사는 주주에 관한 사항을 공시함

#1) 공시자료 :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회사 엘아이지	본인	보통주	10,200,000	46.36	10,200,000	46.36	-
구	특수관계인	보통주	60,000	0.27	60,000	0.27	-
구	특수관계인	보통주	40,000	0.18	40,000	0.18	-
구	특수관계인	보통주	1,440	0.01	1,440	0.01	-
구	특수관계인	보통주	960	0.00	960	0.00	-
구	특수관계인	보통주	360	0.00	360	0.00	-
구	특수관계인	보통주	240	0.00	240	0.00	-
유	특수관계인	보통주	30,000	0.14	30,000	0.14	-
김	특수관계인	보통주	5,215	0.02	5,215	0.02	-
이	특수관계인	보통주	6,000	0.03	6,000	0.03	-
이	특수관계인	보통주	2,500	0.01	2,500	0.01	-
박	특수관계인	보통주	840	0.00	840	0.00	-
박	특수관계인	보통주	1,500	0.01	1,500	0.01	-
최	특수관계인	보통주	1,584	0.01	1,584	0.01	-
천	특수관계인	보통주	300	0.00	300	0.00	-
계		보통주	10,350,939	47.05	10,350,939	47.05	-
		우선주	-	-	-	-	-

9.4. 방위산업 매출 비중

- 1) 회사는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 및 매출액에 대하여
공시함

#1) 공시자료 : 재무제표 주석

18. 수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매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 20(당) 기 3분기		제 19(전) 기 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445,849,627	1,204,794,484	401,195,548	1,081,788,331
한 시점에 수익 인식	11,188,745	33,555,112	9,223,685	26,652,706
기타매출	1,170,105	10,318,344	2,014,467	4,329,546
합 계	458,208,477	1,248,667,940	412,433,700	1,112,770,583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 20(당) 기 3분기		제 19(전) 기 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A고객	284,436,861	746,764,879	208,239,581	534,890,236
B고객	68,019,973	159,448,778	51,432,984	124,734,191
합 계	352,456,834	906,213,657	259,672,565	659,624,427

10. List of Evidence & Sources

No.	Type (Webpage or Document)	Name	Link
01	Document	윤리/준법경영 보고서	미정
02	Webpage	CEO 메시지	https://www.lignex1.com/web/kor/management/philosophy.do
03	Document	윤리규범	https://www.lignex1.com/web/kor/management/rule.do
04	Document	윤리규범실천지침	https://www.lignex1.com/web/kor/management/rule.do
05	Document	준법통제기준	https://www.lignex1.com/web/kor/management/rule.do
06	Documen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https://www.lignex1.com/web/kor/management/rule.do
07	Document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https://www.lignex1.com/web/kor/management/rule.do
08	Webpage	사업보고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8000255
09	Webpage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현황 (안내공시)_21.12.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1216800840
10	Webpage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현황 (안내공시)_21.06.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8800160
11	Webpage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현황 (안내공시)_18.01.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80119800301
12	Webpage	상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
13	Webpage	신고센터	http://www.lignex1.com/web/kor/management/reportCenter/guided.do
14	Webpage	협력업체구매포탈	https://nisp.lignex1.com/noauth/index.jsp
15	Webpage	고충상담창구	https://www.lignex1.com/web/kor/management/partnersReport/guided.do
16	Webpage	공직자윤리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002&lsiSeq=230789#0000
17	Webpage	방위사업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01&lsiSeq=216195#0000
18	Webpage	국회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D%9A%8C%EB%B2%95#undefined
19	Webpage	공시자료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8000255